

것입니다.

사회보호법 제38조에는 "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변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고 하며

1. 승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호전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의 정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재가 보호감호 청구의 원인이 된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으려서 형법 제43조 2항에 의해 부차적으로 부과되는 자격정지와 일점일획도 다르지 않고, 형법 제41조에 자격정지도 죄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죄의 輕重을 다룬 형법 제50조에는 자격정지를 자격상실 다음가는 무거운 형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격정지로 형법이 정한 죄이 분명하다면 재가 1997. 2. 14. 대구지방법원 검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와 보호감호가 선고된 범죄가 동일한 범죄이므로 헌법 제13조 1항 하관의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분명히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치소 교수의 미결 수용자의 부재자 투룬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감호자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할 여지가 충분하고 보호감호가 형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즉 죄의 대가에 해당되는 형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강연회 형벌인 자격정지가 주어지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보호법 제38조에 의해 보호감호에 부차적으로 부과되는 자격정지는 결국 보호감호가 죄이고 자격정지보다 무거운 형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보호감호가 형벌이 아니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엄밀히 말해 크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호법 제38조는 분명히 헌법 제13조 1항 하관의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미결 수용자의 부재자 투룬나 피선거권 유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보호감호 기간 중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정지한 것은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을 막았다고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데 이런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위한 3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거각되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재세하고 진실된 이웃의 생명으로 감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2. 2002. 3.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최정철 재판관)는 <보호감호는 죄를 벌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감호하므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막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며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가)는 취지로 합
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감호에 대한 위헌 심판이 있을 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항상 정
체적이거나 이상적인 결정을 내려왔으므로 역시 짐작하고 있던 일이
었고,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추상공론식 결정이라는 것은 조금만 안
습을 처치고 들여다보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므로 비록 저의 심판이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피해상사자들^{정반} 2.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어서 이 결의서를 드립니다.

제가 2002. 12 호순경에 헌법재판소에 사회보호법의 제재를 주장하는
(호소문)을 제출하여 보호감호의 위헌·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
는데 이 결의서에는 (호소문)에 적지 않은 현실속의 사실을 주로
지적하고 (호소문)은 첨부하여 참고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 국민의 기본권은 부득이 주 소수의 복리를 위하여는 목적일 때면 제
한이 가능하고 절당한 제한의 정도로 '최소의 정도'에 그쳐야 하
며 제한의 방법 또한 그 제한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소의와 제한되는
기본권을 서로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균형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해 볼 때 이미 감호자는 위법행위
의 부책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복역을 증명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이 목적
하는 소의를 상당 부분 충성하였으므로 보호감호를 통해 충성하려는
소의는 전혀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호감호는 감호자의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징역형을
부역할 때와 똑 같이 관습한 폐쇄중수감(閉鎖重拘禁)으로 '최대의
정도'이고 보호감호를 통해서 충성하려는 소의와 감호자가 제한 받고
있는 기본권을 서로 비교하면 감호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전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보호감호에 대한 논란의 초점은 과연 보호감호가 형벌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재를 가할 때 그것이 형벌인
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1) 과연 그 제재처치의 實체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
이 될 것이며

2) 국가가 그 제재처치를 무엇으로 취급하고 관리하느냐

3) 그 제재를 양하는 국민이 그 제재처치를 무엇이라고 받아들이느냐

4) 그리고 일반 대중이 그 제재처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가

형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그 제재를 가하는 국가나 제재를 양하는 국민(상사자)은 물론
일반 대중도 모두 그 제재처치가 형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분서상
으로나 법률상으로도 형벌로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재처
치를 명문화한 법률에 분서상의 '목적' 하나만이 형벌과 다른 목적과

취지를 지녔기 때문에 이는 형벌로 볼 수 없고, 법전의 문구를 근
거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합헌헌법재판관의 正道이지 실질적인 현실을

감호자가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다.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식품은 거의 즉시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위에 가까운 특점 장래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중 범죄 알선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문제가 터질 듯합니다.

다) 제철 과일도 수확한지 오래되어 과일로써 맛을 상실한 저급한 과일이 대부분으로 중앙반 기준치를 채우는데 급급하고 신문의 고시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형차와 완전히 똑 같습니다.

7) 自費로 병원에 진찰이나 치료를 받으러 가려고 해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응급환자가 아니면 병원으로 진찰을 나가서 절차를 밟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전 예사고, 외부 병원에 진찰이나 치료를 위해 護送할 때 환차임에도 불구하고 양 손목에 수갑을 두개씩 채우고 다시 손목과 팔과 허리를 연결하여 완전히 로승으로 묶은 후에 감호자 1인당 교도관이 2인 이상 권총과 가스총을 휴대하고 계호를 합니다. 영감 없는 (형악법 죄수) 꼴입니다.

8) 사선의 검열이나, 면회를 할 때 교도관이 임회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수형차와 똑 같고 전화통화를 할 때에도 감호자의 말 뿐 아니라 상대방의 말까지도 일일이 監聽하는 것도 수형차와 한 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9) 보호감호 기간 중에 감호소 주착을 위반하면 심할 경우 連鎖라고 하여 죄수들로 손과 발목과 허리를 묶어 옥방에 감금하는 경우도

嚴重獨居 수형을 실시하는 등 차마 수형차라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없는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강제행위로 거듭서 시듭니다. 이것은 절사유지 차원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감호자를 마치 흉악한 범죄자처럼 다루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 법무부도 보호감호를 경별로 취급·관리하고 있습니다.

1) TV나 선불기 및 온돌난방관별 설치 등 문화적인 시설이나 생활 기반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항상 감호소는 제외되거나 다른 일반교도소에 비해 가장 늦게 설치하는 것을 보더라도 감호소는 실질적으로 교도소 중에서 最下位에 해당하는 重拘禁교도소로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만약 감호자를 진정으로 再社會化시키기 위해서 수용하고 있다면 재사회화 조치나 사회 적응력 강화 조치라고 볼 수 있는 문화적 교육이나 생활기반 시설을 교도소보다 우선하여 시행하거나 설치하여야 강연하지 않겠습니까.

2) 또 우리 감호자를 직접 교육·교화하고 관리 감독·戒護하는 감호소의 교도관 이하 모든 직원들은 감호자를 수형차처럼 취급하고 있고 감호자들로 罪田 취급을 받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강연하게 수형차 취급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는 관계 공무원들이 교도소와 감호소를 오가며 근무하게 되어 있는 보호감호 집행의 二元化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기도 하겠습니 라만 철저히 교육만 하면 충분히 解消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감호자를 수형자와 똑같이 취급하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다. 법률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보호감호가 형벌이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 집니다. 보호감호가 형벌의 根幹이 되는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恣意的인 해석의 금지, 과잉형벌 금지의 원칙 등을 어겼고 형벌과 같이 법률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호소문>에서 일일이 지적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1) 사회보호법 제42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정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行刑과 보호감호는 목적이나 취지가 완전히 다르고, 헌법재판소도 '보호감호는 형벌과 완전히 구별되는 목적과 취지를 가졌으므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환시하고 있는데 행정법에 준용하여 사회보호법의 목적과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감호자는 모든 것이 수형자와 똑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2) 주·부식 급여에 대한 규칙도 <재소자 주·부식 급여 규칙>을 준용하도록 죄보호감호자 분류 차우 규칙 제4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의류 및 침구도 <재소자 의류 및 침구 등 제식 규칙>을 2

대로 준용하도록 등 규칙 제46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직업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도 <수형자 직업훈련 규정>을 활자화하여 정하도록 등 규칙 제117조 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5) 귀휴도 수형자의 <귀휴 시행 규칙> 및 <귀휴 심사위원회 규칙>을 따르도록 등 규칙 152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6) 감호자의 주말은 <수형자 주말 제도 개선 지침>에 의한다 등 규칙 5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7) 일일이 열거하는 것도 귀찮다는 뜻이 죄보호감호자 분류 차우 규칙 100조에는 아예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법, 등 시행령, 수형자 분류 차우 규칙 또는 분류 차우 업무 지침 등 교정 관계 법령 또는 교정 慣行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형자와 똑같이 취급하여 분류·차우하는 것은 물론 수형자를 취급하던 관행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8) 하물며 <감호자 준수사항>도 재소자관 호칭만 감호자로 바뀌었을 뿐 재소자(수형자) 준수사항과 일질일취로 다르지 않도록 합니다.

감호자가 수형자와 똑같은 차우를 받고 있는 경우, 어쩌면 수형자보다 더 나쁜 차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수형자와 똑같거나 어쩌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수형자와 똑같은 법과 규칙, 관행에 따라 배우고 수형자와 똑같은 준수사항을 지키라고 하면서 "감호자는 수형자가 아니다" 라고 하니 국가의 법 집행은 무슨 이런 표현을 써서 안 됐습니까. 저나저런 게가 웃을 노릇입니다.

이래도 보호감호는 형벌이 아니라고 우기실 겁니까. 지금의 보호감호가 형벌이 아닌 이유를 단 한가지라도 제시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차치하고 유럽 형사규칙 64조에서는 "구속형은 자기를 박탈함으로써 그 자체가 형벌"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호스문>에서는 보호감호를 비유하여 '우유를 사이다병에 담아놓은 사이다라고 우기는 것과 라름없다'고 했습니까. 이것 역시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보호감호는 누가 보아도 우유가 담긴 우유팩이 분명한데도 '우유'라고 쓴 부분을 흰 종이로 가리고 '사이다'라고 쓴 라름 사이다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해야 그나마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 리보호감호자 분류 차우 규칙에는 그나마 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과 연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이런 조항들이 보호감호가 형벌과 다른 목적을 가졌다는 논리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제는 등 규칙 속에 하나의 문구로만 그런 조항들이 존재할 뿐 실제로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조항들은 고조

위장술로 보호감호가 형벌이 아니라는 근거로 인용될 수 있는 문구에 불과할 뿐 전혀 그 효용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 규칙 제62조에 명시한 <외부 증교행사 참여>, 제68조에 명시한 <영화 등의 관람>, 제72조에 명시한 <외부 출장근로>, 제75조에 명시한 <개인근로> 등 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에 도움이 되는 조항들이 여러 있음에도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조항들은 근거로 보호감호가 수형과 구별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 특히 등 규칙 제70조 2항에는 "근로는 감호자의 근로의욕을 촉진시키고 직업상 유용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호자의 근로의욕을 촉진시키고 직업상 유용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국가에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현재 감호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이봉투 접기'와 '머리핀에 리벳팅 하기', '비닐 위생장갑 세어서 랍기' 등의 작업이 근로의욕을 촉진시키고 직업상 유용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의 교도소 중에서 가장 열악한 작업환경과 작업내용을 보여주는 청송교도소로 '레이트용 붓 제작', '로대거마니 제작', '가방봉제', '플라스틱 바구니 제작', '어망 제작' 등이었는데 (1999년 감사) 청송제1보호감호소는 '종이봉투 접기' 뿐이고 2감호소는 '종이봉투 접기', '머리핀에 리벳팅 하기', '비닐 위생장갑 세어서 랍기' 작업 뿐입니다.

24마 코르스에서 사회에 복귀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3급이나 4급이 있는 직업을 시켰는데, 사회복지 및 근로의욕을 촉진시키며
 직업상 유용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야 할 보호감호 기간 중
 에는 직업으로서의 전혀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코르스와 할리 근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형벌이 아니고 사회복지
 촉진을 보호처라고 강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호소문>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 직업상여금이 근로보상금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액수가 너무나 적어서 사회복지 촉진은 지
 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4마 2003년 1월부터 근로보상
 금 20% 인상했습니다만 건축मुख 직업훈련생의 경우 2003년 1월이
 평균 47,628원의 근로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필요한 물품과 상비의약품, 도시, 신문 등을 구입하고 아
 르면 외부병원 진료비도 하고 같은 돈으로 저축을 하여 사회적
 차금으로 삼으려는 것이 과연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다수의
 감호자는 근로보상금의 적립은 커녕 가족이나 친지, 지인 또는 차매결연
 맺은 복지재단부터 감호소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호감호가 근로보상금 적립을 통한 사회복지 촉진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
 족이나 친지, 지인들에게 누가 되는 존재가 되어 보호감호 기간 중에 차
 금 손실이 누적되어 사회복지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 한 해 동안 정보기계 운봉 직업훈련생으로 있으면서 직업

등급이 5등급인데 보호감호 개시 2년 8개월에서 3년 7개월까지 일 년 중
 한 462.650원의 근로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한 해에 평균 38,554원의 근
 로보상금을 받은 셈인데 신문구독과 일용품, 의약품 구입비로 121,850원,
 기타 도시와 물품 구입비로 154,210원, 외부병원 진료비로 107,810원 모두
 합하여 383,870원을 사용하고 78,780원은 저축하였습니^다.
 2년째, 24마 78780원이므로 실질적으로 저축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차행이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저축으로부터 한 해 동안 163만여원의 돈을
 송금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2002년은 병원 진료와 치료가 많아
 서 송금도 좀 많이 받긴 했습니^다지만 저뿐 아니라 모든 감호자들이
 근로보상금을 많이 보아서 사회에 출소 후 새생활을 위한 사회적
 책 부담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은 가지고 보호감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적은 액수의 근로보상금을
 받고 있는데다가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저축은 사
 실상 불가능합니다.
 일 년에 462.650원을 벌어서 200여만원을 써야 하는 현실이 현재의
 보호감호입니다. 물론 모든 감호자들이 일년에 200여만원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저 또한 특별히 병원비 지출이 많아서 소비가 컸던 점은
 인정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적자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족과 친지, 지인들에게는 보호감호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
 는 도약의 시간이 아니라 무감만 저중시키는 기간이고 감호자에게
 는 죽기보다 싫은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보호감호가 감호자의 사회복귀 및 정착에 왜 방해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 <호스부>와 위세자로 지적한 대로 보호감호가 걸리면 길어질수록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고, 오지에 위치한 감호소의 특성상 왕래의 관절이 선소의 관절을 이어져 결국은 감호자를 고립화합니다. 이런 고립화는 비단 경제적인 부담에서나 왕래의 단절에서만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수용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 선조한 부모님의 사망, 특히 이혼에 의한 선소의 관절은 그 문제가 단순히 감호자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쳐서 잠재적으로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배태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호자가 고립화되면 될수록 가출 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 신고를 할 때 만날 수 밖에 없는 감호소 중년들과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함께 모여서 나쁜 길로 빠지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과거에 범죄에 익숙해져 있던 출소자들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부모님의 사망이나 가정의 파탄은 부모와 가족에게 속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오는 다지고 있던 감호자에게 속죄의 대상이 없어지게 하여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최악의 경우에 각치면 또다시 범죄를 선택하게 합니다.

나. 감호자의 사회복귀 및 정착의 책임은 무엇보다 <문>입니다.

자고 먹고 싶은 것이 우선 해결이 되어야 올바른 사회정착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랜 수용생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야말로 바로 범죄가 아닌 올바른 사회생활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소 후에 방한 관이라도 마련하고 관한 우월이라도 사회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된다면 감호소 출소자의 재범률은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호감호는 있던 선소로 관절시키고 무일푼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감호자를 사회로 내몰아 감호자의 올바른 사회정착을 극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꼴입니다.

다. 법무부나 관계기관,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소의 폐해에 관심이 있는 많은 법조인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감호자가 사회정착금 없이 출소하는 것은 세련의 범죄를 반복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보호감호의 청수를 취할 수 있는 다른 위법행위에 쉽게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수용생활 등으로 실질적인 신용 거래가 거의 없었던 감호자는 금융기관 신용 불량 경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불법 신용카드 확인업자들의 유혹과 가출소자 스스로의 사회정착 생계 자금의 절실한 필요가 서로 일치하여 수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즉경 '카드깡'이라는 불법 신용카드 확인을 통한 생계자금 마련이 행해지는 경우나 역시 같은 방법의 자음차 환부 구입 후 轉賣나 가전제품 환부 구입 후 전

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위법행위의 발생 요인이 보호감호라는 이름의 수용장기화가 빚어낸 사회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취업이 불가능해지면 도박, 투전 등의 현장에서 뿔뿔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등 언뜻 보기에는 보호감호와 별개의 문제로 여겨지기 쉬운 것들이 사실은 모두 보호감호의 문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불법 활용이나 자승차, 가전제품 할부 구입 후 전 때 등은 신용불량을 초래하여 결국은 사회정책에 실패하게 합니다. 이는 사회보호법이 사회를 보호하기는 커녕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가 재정을 흠박게 하고 있다는 중은 예가 될 것입니다.

라. 감호자의 사회정책에 대한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가는 예산 문제와 양로원이나 교정 등 복지시설과의 예산배정 우선 순위를 들먹입니다. 그러나 감호자는 국가에 의해 아무런 잘못 없이 모든 기본권이 박탈당한 채 강제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므로 절대적 예산배정 우선 순위를 논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짜로 사회정책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사회정책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어찌 예산의 문제이고 예산 배정의 우선 순위를 논할 문제란 말입니까.

다. 장기 수용생활과 질이 나쁘고 영양상태가 불량한 식생활로 인하여 위장이나 소화기, 내분비계 계통의 질병이나 잇몸질환, 안과 질환 등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 그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할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병원비 등은 감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므로 근로보상금 등의 지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출소 후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영화 10도를 오르내리는 산간오지의 감호소에서 한겨울에도 난방시설이 전혀 안 된 차고는 마구바락에서의 오랜 수용생활은 대부분 중장년 층인 감호자의 안전 계통의 질병을 유발시켜 출소 후 사회생활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여 사회정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불량한寢食生活에 의한 감호자의 체력 저하와 발병은 장애적으로 보아도 장차 감호소 출소자의 경제적 손실을 크게 하고 있어 사회생활의 방해 요인이 되면 되었지 절대 촉진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바. 보호감호소에서의 직업훈련은 절대 사회복지를 촉진하는 직업상 기회를 배우고 익히는 기회가 못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과정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커을 좋은 훈련에 불과하지만 자격증 취득 시험 등의 잘못된 점과 관공 공무원과 직업훈련 교사의 실적 위주의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감호자의 처부를 모두 드러내야 하는 경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절의서에서 일일이 글로 지적할 수 없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진정한 감호자의 사회복지 촉진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져서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 갑호소 출소자의 재범률이 46%를 웃돌고 있다는 것은 장기 수용으로 인한 사회적응력 상실과 收容症候群, 사회정착 자금 및 정착 대책 부재 등 보호감호제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현재 현재 갑호소에 수용 중인 갑호자의 책임이란 불입한다. 더구나 5년 이내의 갑호소 출소자의 재범률이 8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호감호의 실패를 극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국가는 이 책임을 변할대야 변할 수 없으므로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현재 갑호소에 수용 중인 갑호자에게 轉嫁하고 있습니다.

실사 5년 이내의 재범률이 80%라고 하더라도 20%의 재범을 하지 않을 갑호자를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早期에 사회에 복귀를 시켜야 마땅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사회적응력이 2급이라도 더 생생하게 살아 있을 개인 보호감호 호기에 일찍 가출증을 시켰더라면 사회적응도 빠르고 재범률도 현저히 감소할테니 오히려 보호감호 기간을 연장하고 가출증을 억제시키므로써 사회적응력을 점점 감소시켜서 사회복귀를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 갑호자가 가출증 시기를 예상할 수 있어야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사회복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그래야만 보다 쉽게 사회에 복귀하여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는 갑호자가

전혀 출소 시기를 예측할 수 없게하여 출소 후의 경쟁계획 수립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출증을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그저 집착으로 시기를 예상하고 가출소 후 생활계획을 세워주었다가 가출소가 불려 되면 감사자인 갑호자 뿐 아니라 가족과 친지·지인들에게 좌절하고 실의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은 사실 단순한 가출소 불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자나 가족에게는 징역 1년형을 추가로 받는 것과 3급으로 강제합니다. 왜냐하면 보호감호는 징역형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 보호감호는 갑호자를 타성에 들게 하며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생활에 부적합한 생활습관에 길들여지게 합니다.

질이 떨어지는 주부식을 제공하여 결국 먹지 않고 버리게 하는 것은 절약 정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음식쓰레기를 할부로 버리는 습관을 틀에 배게 하므로써 현재 사회생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환경보호와 쓰레기 분리 수거에 역행하는 생활습관에 길들여지게 합니다. 또한 조잡한 官給 물품을 지급하여 결국 사용하지 않고 버리게 되므로써 원칙적으로는 국가재정의 낭비를 가져오고 절약 정신의 결여 등 사회생활에 부적합한 생활습관에 길들여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수용증후군이 1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 적응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 일반국민들이 보호감호소를 흉악범을 收容하여 수형하는 重拘禁교도소

로 오해하고 있는 것도 검호자의 사회복귀에 커다란 장애 요인의 하나입니다.

이런 일반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은 군사정권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그릇된 선전 탓이기도 하지만 그 후로도 국가는 지속적으로 검호자를 흉악범 교도소로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왔으며 헌법재판소의 선례 그리고 수형자 처럼 취급하여 호송하고 면회와 종교집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오해하게끔 한 법무부 교정감국의 책임이 무엇보다 타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이런 오해에 의한 피해를 경감은 검호자가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경수보호검호자를 교도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검호자의 가족들까지도 보호검호를 징역형으로 여기고 있지 비유 없는 강제 구금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호법의 보호검호의 폐지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국가는 국민의 이런 정서를 운운하는데 이는 검호자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언론의 책임입니다.

특히 검호소 출소자는 신원보증과 취업보증, 보호관찰 등으로 인하여 검호소 거주소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날 수 밖에 없고, 악용하게 의심 받거나 행동의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취업보증과 신원보증을 구실로 근로 현장에서 자신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게 하는 등 관습한 검호자의 사회복귀 방해 뿐 아니라 심각한 인

권 침해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검찰소 중인 보호관찰자라는 사실 때문에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나 지시에 어느 수준까지는 응할 수 밖에 없고 검찰소 치소를 우려하여 쉽게 항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는 검찰소자가 불만을 죽으로 억누르겠지만 그런 불만이 쌓여 급기야는 한 순간에 폭발하여 큰 범죄를 유발시키거나 결국 전리라 못해 취업하고 있던 근로 현장을 이탈하여 범죄로 빠져들게 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보호검호의 현실입니다.

4. 사회보호법의 보호검호는 군사정권의 인권탄압 수단의 하나였던 삼청교육의 인권침해 실상을 은폐할 목적으로 삼청교육 대상자 중에서 불만이 많은 사립이나 무상자 등을 재수용하여 삼청교육이 사회를 제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안전법>을 모방하여 증속으로 만든 이전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보호법의 제정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하였기 때문에 관련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러나 사회보호법의 模範이 되었던 사회안전법도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이미 폐지되었는데 그 자식적인 사회보호법은 아직도 버젓이 존재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어찌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전향 장가수가 경기를 종료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아무런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해 철도불가경관 조치라고 하더라도 재수용하는 것은 구금 자체로 형벌이라고 봐서 사회안전법과 보안감호조는 제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지의 배경에는 반국가적 사범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헌법에 명시된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적 사명이 어우러져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를 전복시킬 목적의 범죄를 저지른 반국가적 사범조차도 그 형을 종료 또는 면제받았다면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이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시대적인 흐름이 북한과 교류가 빈번해지고 통일을 지향하는 시점이라고 하여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한다고 타분히 정치적인 주장을 하면서 배가 그와서 사과 2개를 훔친 사람을 보호감호라는 명목으로 6년 11개월이나 강제 구금하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제重拘禁을 저행하는 보호감호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니 어찌 상식이 통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

사방이 15척의 높은 담이 쳐져있고 철창이 둘러쳐진 감옥에 갇혀 있고 실은 부모경제 사랑하는 처자식을 마음대로 못 보는 것은 그사하고 현저한 감 전화 한 통하도 내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에 죄 없이 갇혀 3, 4년만 살아보십시오.

업종실현에 사방이 콘크리트 벽이고 죄장상에 철문인 차가르 나무바닥에 누워 비닐장문으로 찬바람을 거리며 체온으로 감도를 타우면서 3, 4년 동안 감을 자 보십시오.

저는 듯한 부더위에 2.5평의 방에, 4~6명이 각자의 개인 쓰지름과 침구, 공동생활용품, 조리 등을 정리하고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체온을 물서리치게 증오하며 선충기 한 대 없이 3, 4년을 살아보십시오.

해묵은 쌀과 보리가 섞인 주식우식한 밥에 한 끼에 돈으로 환산하여 400원쯤 되는 부식으로 목숨을 부지하며 한 1년만 생활해 보십시오.

부채집으로 예수님도 아무런 죄 없이 이런 환경에서 3, 4년을 살고 가면 저절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증오가 생길 것이며 공자님이라고 해도 저절로 입에서 불탄과 욕설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감호처는 징역형을 집행하는 교도소와 똑 같은 시설에서 똑 같은 식사를 하고 똑 같은 수용부를 입고 똑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찌서 보호감호는 형벌이 아니란 말입니까

교도관이 24시간 감시감촉하고 있고 교도소의 수형자와 똑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생활해야 하는데 어찌서 보호감호가 형벌이 아니란 말입니까.

모든 법률과 조칙, 업무지침 등이 법률과 조칙에 의해 수형자와 똑같이 분류하고 채우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법과 조칙, 업무지침 등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교도소에서 수형자를 채우하던 교정관행에 따른다고 '외보호감호자 분류 채우 조칙' 제100조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어

해서 감호자를 수형자로 분류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는커녕 있던 가정도 파괴시키고 사회복귀를 도와주려던 지인들의 선의마저 끊어지게 하여 사회복귀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자녀를 다쳐 탈선의 현장으로 내몰아 참차 사회의 악이 크게 할 우려를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는데 어찌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한다고 우길란 말입니까.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는 사람은 잡아가두어 늑대 병든거나 사회 생활에 부적합한 생활습관에 들리게 한 다음 사회로 내모는 것이 어찌 사회복귀 촉진이란 말입니까.

출소하면 부모님께 혼드라고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고 맹세를 거듭했는데 보호감호를 살고 있는 동안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아내와 자식은 떠나버렸다면 이것이 과연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보호감호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일반교로의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30~40%라고 하는데 감호출소자의 재범률이 92%에 육박하고 있다면 이는 보호감호의 실패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왜 실패했겠습니까. 그것은 징역형과 똑같은 단순한 체외중수금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의 사실과 사회보호법 제42조의 행정법 준용 규정, 죄보호감호자 분류 채우 규칙 등에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 라면 어느 누구라도 형중보호감호소는 교로로 감호자는 죄수라고 인정하

고 있는데 유독 권법제관으로 보호감호가 형벌이 아니라고 우기는 아유를 분명히 밝혀서 우대하고 어리석은 정의자와 인권을중시단체, 사회운동단체 여러분, 그리고 국민을 일깨워 주십시오.
이 정의를 추성하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한스러웠습니다. 무지한 탓에 악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불경스러운 표현이 있었던 점 깊이 사과드리며 용서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저희 감호자들이 악한 무살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와 국민의 혼도에 속아 저희들의 사회복귀를 반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반성과 자기수양으로 국가와 사회에 폐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성의있는 자세로 헌신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03. 3.

위 정의자 조석영

법무서유

호소문 사본 1부

권법제관소 결정 사본 1부

권법제관소 행정청 제관관 귀하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송 2 보호감호소 방문 보고 3월 19일~20일

10시~11시30분 천주교 종교집회를 권중희 베드로(청송 2감호소, 청송 2교도소 담당신부), 유 마리아 수녀 등과 감호소 교회당에서 미사 봉헌. 피감호자 150여명 참석

11시 30분~12시 장우영 교무과장, 이교원 교무계장 등 면담.
피감호자들의 단식과정 설명 듣고 후속 조치등에 대해 질의응답..

12시~2시 청송 1·2교도소, 1·2 감호소 교정사목담당 신부, 수녀들과 간담회
숙소 제공 및 향후 도움 협의

2시~4시 조석영·이영철·이종호씨 면담

특이사항 1. 조석영씨가 설문조사시 답변을 쓸 공간이 부족하므로, 미리 작성한 답변 내용을 서신검열 등을 거치지 않고 공대위에 전달 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요청.
2. 이종호씨의 아들이 2002년 11월 21일 군부대에서 자살.
유서와 일기장에 부대원들의 집단 이지메로 인해 자살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
자신이 감호자이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생각.
천주교인권위에서 국가 상대 손해 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돕기로 함.

◎ 작업과 근로보상금 담당 직원과 통화
감호자의 작업은 징역이 아닌 때문에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임.
위탁작업(위생장갑, 머리핀 등)은 근로보상금의 150% 까지 추가 지급 가능.
관용부의 보상금이 일반 훈련생이나 공장 출력수보다 많은데
그 이유는 아침, 저녁으로 근로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
실제 지난달에는 300,000원을 수령한 피감호자가 있음.

◎ 27일~28일 방문시 유의사항

숙소 1안 감호소에서 10분거리인 진보면에 천주교 공소가 있음.
마루와 방에서 나누어 취침가능. (마을회관과 비슷)
10여명 숙식 가능
2안 영주(감호소에서 1시간 20분거리)의 수도원(최송곤신부). 1인 1실.
식당에서 회의 등 진행 가능.

◎ 감호소에 공문 보내기
감호소에 집단 면담의 형식과 면담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적어
공대위명의로 공문 발송 필요. (소장 + 서무과장 앞)
작업과에서 지급되는 근로보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문서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 필요. (소장 + 작업과장)

◎ 언론 홍보 활동

청송 방문에 대한 보도 자료 배포. 2일전.
기자들과 개별 연락을 하여 함께 내려가는 방법도 고민.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Team과 동행.

◎ 공대위 분담금 인의협, 천주교인권위, 민변, 사랑방, 원불교, 참여연대만 납부.
타 단체 분담금 이른 시기에 납부 요망.
우리은행 김덕진 454-038829-02-001

◎ 청송 방문 당일 숙소와 차량은 공대위에서 부담
식사와 뒷풀이 비용 각출.
참가비 1인 2만원 정도 적당한 듯.

각 단체의 참가자 24일까지 총화 필수...
각 단체 별로 참가자 명단을 제게 메일로 보내주세요.

정리 : 천주교인권위 명랑청년 김덕진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서번호 : 03-04-02

수신 : 청송 제2 보호감호소 소장 및 서무과장님 귀하

발신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 **청송 제2보호감호소 방문 협조요청**

날짜 : 2003년 4월 9일

문의 :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016-706-8105

1. 피감호자들의 교화와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간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
를 드립니다.

2. 우리 공동대책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실현을 위해 26개의 민간단체가 함께 만
든 네트워크 조직으로 3월 11일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공대위는 오는 4월 10일 청송 제2 감호소를 방문하여 소
장님을 비롯 피감호자들을 면담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접견하고자하는 피감호자들
의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추후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과 조정이 가능합니다.

<면담자>

강흥희 918, 김명수 401, 김태주 634, 박한규 620, 설인수 994, 신용균 490, 이상
본 679, 이상우 393, 장병일 789, 정재석 605, 조석영 259, 조원옥 768, 주금선 292,
최문철 268, 황영하 287 등

4. 귀 감호소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 연중기획 워크샵>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안(초안)

「사회보호법 폐지 공동대책위」, 「국가인권위 쇄신 열린회의」 공동주관

작성 : 공대위 사무국, 열린회의 워크샵팀
2003. 4. 10(목)

□ 제안배경

- 3월 26일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아래 열린회의)는, 국가인권위 태스크포스팀에서 다루는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인권현안에 대해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 연중기획 워크샵>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4월 7일 열린회의는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 연중기획 워크샵>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사회보호법 워크샵)를 「사회보호법 폐지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와 공동주관할 것을 제안함
- 같은 날 공대위는 사회보호법 워크샵 공동주관을 수락하고, 실무준비모임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4월 9일 공대위 사무국(유해정)과 열린회의 워크샵팀(범용)이 사회보호법 워크샵 첫 번째 실무준비모임을 갖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합의함
- 이에 공대위와 열린회의 차원의 검토를 요청함

□ 사회보호법 워크샵 목적

-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의 활동계획을 공론화하고 인권진영의 의견을 개진함
- 사회보호법에 대한 인권진영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가인권위에 명확히 전달함
-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인권진영의 요구안을 확정하는 계기로 삼음

□ 사회보호법 워크샵 개요

- 날짜 : 4월 29일(화) 혹은 30일(수)
- 장소 : 미정 (참고로 인권위 배움터는 이미 일정이 있음)
- 발표주제
 -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의 활동계획 -> 태스크포스팀
 - 사회보호법에 관한 쟁점들 -> 공대위
 - 인권위에 바라는 사회보호법 활동방식 -> 열린회의
 - 사회보호법 실태조사의 내용 -> 공대위

□ 실무준비

- 준비주체 : 공대위 사무국, 열린회의 워크샵팀
- 재정 : 20만원 + a (공대위와 열린회의 공동분담)
 - 장소 - 가능한 무료인 곳으로
 - 발제비 - 없음
 - 자료집 50부 - 10만원
 - 플랜카드 1개 - 5만원
 - 음료수·다과 - 5만원
- 다음번 실무모임 : 4월 14일(월) 낮 2시가 어떨는지?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담당자 : 김덕진 777-0643, 016-706-8105 팩스 : 775-6267

문서번호 : 2003-0407-01

수신 : 청송 제 2 보호감호소 소장님

참조 : 서무과장, 보안과장, 교무과장, 작업과장

발신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6개 단체)

제목 : 청송 제 2 보호감호소 방문에 대한 협조의 건

날짜 : 2003년 4월 10일

- 언제나 피감호자들의 교화와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 2003년 3월 11일 26개의 시민·사회·인권 단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한 사실은 이미 언론 등의 보도에 의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그동안 개별 단체들과 변호사들의 방문과 조사 작업은 있었으나, 공대위 차원의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관계로 이번 방문을 통해 청송감호소의 피감호자들의 의견 뿐만 아니라 소장님이하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경청을 하려고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지정하는 피감호자들과의 집단 면담이 가능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장님을 비롯한 책임있는 직원분들과의 간담회 역시 요청 드리오니 꼭 자리를 만들어 청송감호소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모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내일(4/8) 중으로 답변을 주시면 실무자와 자세한 내용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찬운 (변호사, 민변)

(직인생략)

사회보호법TFT 제3차 모임 결과

| | | | |
|-----|---|----|-------------------|
| 일시 | 2003. 4. 11. 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소회의실1 |
| 참석자 | 유현(상임위원), 김오섭(비상임위원), 송지영(법제개선담당관실), 구교식(상임위원행정비서), 김혜정(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민재(민변, 법무법인 청지), 송문호(대구카톨릭대),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장유식(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 |

논 의 사 항

○ 경과 보고

1. 외부전문가 추가 선정 결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혜정 박사, 민변 박민재 변호사,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가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시기로 하여, 총 5분으로 외부전문가 구성이 확정되었음.

2. 보호감호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협조 요청

현재의 보호감호제도 운영에 관한 정확한 자료의 입수를 위해, 법무부 및 청송보호감호소에 대하여 피보호감호자 현황, 처우 등에 관련된 각종 통계 및 관련 지침의 제공을 요청하였음. 업무협조는 원활히 되고 있으나, 해당 기관에서 최근까지의 통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자료의 입수까지는 약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3. 실태조사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인 문제

실태조사의 주체에 관하여 태스크포스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외부에 연구용역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있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의 형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5월초로 예정된 용역사업 공고를 통해 선정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태스크포스팀이 아닌 다른 단체가 선정될 수 있음.

○ 실태조사 기획 제안 및 설명(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실태조사는 가능한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임. 피감호자, 교정 공무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시설과 운영전반에 대한 다각도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실태조사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실태조사팀의 인원구성, 일정 및 조사내용 정리를 맡도록 하고, 현장 실태조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일관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청문회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감호자, 출소자, 교정공무원, 범죄피해자, 경찰, 법학자 등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실태조사의 방법, 범위 등에 대한 토의

-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의미를 정립해야 할 것임. 감호자 및 교정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가 기본이 될 것이며, 수용거실, 식당, 작업장 등 시설의 운영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함.

-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지 여러 차례 실태조사를 나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음.

- 설문조사 외에 선별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며, 가출소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의 대상 인원을 확정해야 할 것임(표본 선정문제). 설문조사 자체의 소요시간은 많지 않으며, 유효 설문지 회수율이 낮음을 감안할 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임.

- 실태조사는 최소한 3번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설문조사시 수용자들에게 배부하여 각자의 거실에서 작성하게 한 뒤 회수하게 하는 방법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다고 봄.

- 예산문제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연구용역으로 할 것인지, 배정된 자체 예산으로 팀 내부에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할 것임.

- 실태조사를 외부 단체에서 용역으로 맡게 되는 것 보다는, 태스크포스팀에서 실시하는 것이 최종 개선안의 마련과정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됨.

- 설문조사의 대상 인원, 인터뷰 대상, 조사의 횟수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수립하여 확정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준비 팀을 구성하여 조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오창익 사무국장, 김혜정 박사, 박민재 변호사, 송지영 실무간사

- 실태조사 예산문제를 사무처에서 확인한 뒤 내주 초 상임위원 보고.

비 고

※ 다음 모임 일정:

2003. 5. 9.(금), 16:00, 인권위원회 13층 소회의실.

"함께해요 참여정부, 사랑해요 대한민국"

법무부

우427-720/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 /전화 02-503-7062 /전송 02-503-7068
보호과 과장 김현정 검사 이용주 담당자 강병호

문서번호 보호61306-368

시행일자 2003/04/14 (1년)

공개여부 (공개)

수신 양대길 귀하

참조

제목 진정에 대한 회신

| | | | |
|-----|----|-----|--|
| 선람 | | 지시 | |
| 접수 | 일자 | 결재 | |
| | 시간 | | |
| | 번호 | 공람 | |
| 처리과 | | | |
| 담당자 | | 심사일 | |
| 심사자 | | | |

1.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2003.3.20,제363-1025호)하여 법무부로 이첩(참여07000-339)된 민원서신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첫째 감호제도는 이중처벌로서 헌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한 악법이므로 철폐되어야 하고, 둘째 감호병과 수형자에게 귀휴, 부부만남의 집 이용 등(이하 귀휴 등) 사회적 처우에서 제외시키거나 차별대우가 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셋째 감호병과 수형자들이 학사고시나 외국어교육 등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수용구분지침을 개정하여 달라고 하였고 네째, 수용자 출원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소송행위 거부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수용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니 조사 요망하였으며 다섯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는데 100일이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취지의 민원을 주셨습니다.

3. 첫째, 보호감호는 형벌만으로는 사회방위와 개인의 법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정책적 이유와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은 책임을 기초로 하는 형벌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개선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벌 외에 보안처분이 필요하여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현행 보호감호제도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급증하고 있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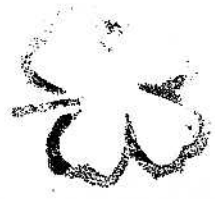
방지하고 있으므로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아시다시피 1996. 1.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회보호법 제5조3호 등에 관한 위헌소원에 대한 심판에서 "보호감호처분과 형벌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보호감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서 헌법 제12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본질과 목적 및 기능에 있어서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인 처분이므로, 형과 보호감호를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헌법 제13조제1항 후단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사회보호법 제25조제1항, 제35조 등에 재범의 위험성의 소멸정도에 따른 단계적인 사회복귀절차(가출소심사·결정)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2조제1항의 신체의 자유 내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형법 및 동법 시행령, 귀휴시행규칙, 부부만남의 집 운영지침상 감호병과 수형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규정은 없으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게 당해 소장이 귀휴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호병과 수형자들이 귀휴 등 사회적 처우에서 제외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수형자 학사고시 및 외국어 교육은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반 교육여건을 갖춘 시설에 집합시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호병과 수형자에 대한 차별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째, 직무유기한 공무원의 성명 및 구체적 직권남용 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여 조사가 불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항에 대하여는 진정서를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로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전결 과장 김현정



수신처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 진행상황

(2003. 4. 14. 현재)

I. 배경 및 운영목표

-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인권현안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 및 검토, 실태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개 주제의 Task Force Team을 운영하기로 결정함.
- 사회보호법은 그 중, 하나의 주제로서 유현 상임위원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게 되며, 금년 10월경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개선방안 권고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함.

II. 현황

1. 회의 진행상황

2003. 1. 21. 내부 준비모임을 가지고 외부 전문가 선정 등 기초적인 팀 운영의 방향을 논의하여, 2. 17.과 3. 14, 두 차례의 전체 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외부 전문가 구성이 최종 확정된 이래, 4. 11 제3차 모임을 가졌음.

2. 구성인원

현재 태스크포스팀 구성인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유현 상임위원을 팀장으로 하여 김오섭 비상임위원, 실무담당 간사로서 법제개선담당관실 송지영,

외부전문가로서 대구카톨릭대 송문호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외에, 민변의 박민재 변호사, 형사정책연구원의 김혜정 박사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확정되어 5명의 외부 인사가 구성되었음.

03/4/16

"함께해요 참여정부, 사랑해요 대한민국"

청송제2보호감호소

우763-710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2 /전화 054-872-9511 /전송 054-872-9704
 서무과 과장 임남순 서부교위 장재권 남양사 김주일

문서번호 서무12620-702

시행일자 2003.04.16 (년)

공개여부 (공 개)

수신 사회보호법 메시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조 변호사 이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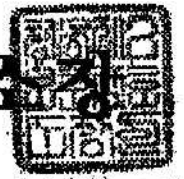
제목 위임장 등 작성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 | | |
|-----|----|----|--|
| 선합 | | 지시 | |
| 접 | 일자 | 시 | |
| 수 | 번호 | 결 | |
| 처리과 | | 재 | |
| 담당자 | | 공 | |
| 심사자 | | 립 | |
| | | 심 | |
| | | 사 | |
| | | 일 | |

1. 평소 교정행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협조 요청하신 위임장 등 작성 협조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가. 위임장은 피보호감호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발송토록 하겠으며,
- 나. 면담자료는 소송을 위임한다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담자료를 다수에게 배포하여 작성케 하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교과 및 수용관리상 부적당하여 허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청송제2보호감호소



수신처

III. 진행상황

- 현재까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관련된 국내의 각종 논문과 판례 및 문제점들에 대한 1차적인 검토를 마쳤으며, 외국의 실태자료를 수집, 조사하고 있음.
- 현행 보호감호제도가 보안처분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격리'에만 치우쳐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
- 한편 보호감호제도 운영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법무부 보호국과 청송보호감호소측에 관련 자료의 협조를 의뢰해 놓은 상태임.
최근의 통계자료 부분은 해당기관에서도 새로이 작성을 하여야 하는 등 자료입수까지는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4. 11. 모임시 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 등에 대해 논의가 되었으며, 구체적인 조사기준이 수립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청송보호감호소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태스크포스팀 내부에서 조사계획 수립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 상시 활동토록 하여 추후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함).

IV. 추후 운영 일정(안)

- 청송보호감호소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5월경).
- 기존 법제 비교연구 및 실태비교 연구를 통해 개선 시안 마련, 중간보고서 발표(6월~7월).
- 청문회(공청회) 개최 통해 사회단체,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8월~9월).
- 최종 시안 마련, 결과 보고 및 공표(10월경)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 연중기획 워크숍 첫번째>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정학

<주제 발표>

사회보호법에 대한 쟁점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상희)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쓴 소리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피보호감호자 실태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공동주관 국가인권위원회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년 4월 29일(화) 4시 / 참여연대 2층 대강당

<취지글 1>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을 고민하자

-- 연중기획 워크숍을 시작하며 --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 기존의 통치기구로는 인권보장에 커다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법체계론적 성찰의 결과로 유엔이 고안해 낸 인권보장 전담 국가기구가 국가인권위다. 한국에서 국가인권위법이 통과된 지 벌써 2년이 흘렀고 인권위법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설립됐으나, 기존 국가권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독립기구로서의 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는 여전히 좌충우돌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권력에 철저히 포위된 채 출범한 국가인권위는 현재 △인권단체들을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의 자세 속에 △인권위법에 명시된 권한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는 자신을 향한 안팎의 매서운 비판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지 못하고 스스로 한없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운영의 나락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현재 국가인권위가 처해 있는 어려움의 원인은 전략적인 사고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결코 출범 초기 운영상의 미숙함 때문이 아니고, 실무적인 경험의 부족 때문도 아니며, 기존 국가권력의 거센 저항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진정사건과 떨어지는 실무 처리에 허덕이며 전략적인 사고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딱한 처지다.

이에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는 국가인권위를 적극적인 인권옹호 기구로 세우기 위해 다른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또는 독자적으로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을 화두로 한 워크숍을 연중 기획하려 한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으로, 연중기획 워크숍의 첫 출발이다. 오늘 워크숍을 통해 사회보호법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매서운 문제의식이 공론화되고,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의 문제의식이 풍부해지길 바란다.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 연중기획 워크숍>은 국가인권위 뿐만 아니라 인권단체 스스로에게도 전략적 사고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등 주제를 달리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워크숍을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

2003년 4월 29일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

사회보호법,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아직 이 세상에 전과자, 감호자라면 나쁜 너무나 딱딱한 이직적인 집단, 사회로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높은 담장, 철창 우리 내에 가두고 그 안에서 보호 받아야 할 인식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편견과 가늠이 한 인간을 낙인적이고 격국엔 제도적 부당성을 합리화하여 영원히 기회균등없이 탈락자가 되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쓰레기일 뿐입니다”

- 청송감호소에서 온 감호자의 편지 중에서

매일 청송에서 오는 편지행렬은 끝이 없습니다. 수심 장애 달하는 편지가 고달파서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정역살이에 대한 동정과 연민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제도가 결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지도, 피보호감호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지도 않는 반인권적이고 위험적인 제도라 확신하기에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보호감호제도의 본질은 결코 이 사회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 태어나 언제나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의 빈곤층 국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장치이며, 기독교 층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라 낙인찍힌 이들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3년 현재, 사회보호법에 의해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수용중인 피감호자는 1600여명에 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더 이상 묵과되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권한과 인력, 열정을 쏟아 부어 이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권의 재판관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소외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 자리가 그 시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3년 4월 29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회보호법에 관한 쟁점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상희

1. 문제제기

가. 사회보호법에 보호감호뿐 아니라 치료감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발제문은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에 대하여만 논하기로 한다.

나.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여, 더 이상 사법부에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된 감호자들은 보호감호제도를 하나의 폭력으로 인식하고 보호감호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보호감호제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계속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세차례에 걸쳐 집단 단식을 하였다.

다. 감호자들에게 보호감호제도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어떻게 행사되기에, 보호감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20년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감호자들은 이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일까? 그리고, 국가는 더 이상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비난받는 보호감호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보호감호제도가 갖는 역사적 배경 및 현실적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보호감호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위헌적인지 검토한다.

라. 마지막으로, 현재 더 이상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 보호감호제도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보호법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와 그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 사회보호법의 역사 및 보호감호제의 의의

사회보호법은 당초 전두환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소위 사회정화프로그램 중 일환인 삼청교육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헌법상 입법기관도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것이었다. 이와같이 보호감호제도가 당초 국가권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억압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었기에 보호감호자에 대한 처분 역시 재사회화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일반 수형자에 대한 처우와 동일하게 격리 위주로 되었고, 피보호감호자를 신

체적, 정신적으로 억압하며 국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과도한 중요성을 심어주는 기능을 하였다. 조지허버트 미드는 어떤 정치 지도자가 국민 모두가 혐오할 만한 공동의 적을 설정해 놓고 국민 개개인의 중요 본능을 그리로 유도하면서 자신을 그 전쟁의 선봉에 세워 놓으면 그는 분명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전두환은 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보호감호제도를 신설하였던 것이다.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으로 보호감호와 치료감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보호감호란, 같은 죄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이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의해 부과되는 시설내 보안처분을 의미한다.

3. 기존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결의 내용

가. 대법원 (1982. 12. 18. 선고 82도2653, 82감도561 판결)

| 청구인 측 | 대법원 |
|---|--|
| 판결문만으로는, 청구인측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함. |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권을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관찰처분으로서 (사회보호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저촉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판단. |

나.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 8, 89헌가44 결정, 1991.4. 1. 선고 89헌마17 결정 참조)

| 보안처분의 한계 | |
|----------|---|
| 문제제기 | |
| 헌재 다수의견 |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의 책임종속성으로 인해 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을 과함이 불가능하거나 비례원칙 제약으로 형벌마개로 행위자의 장래의 재범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 사회방위와 행위자의 사회복지 목적 달성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20세기 전반부터 구라파대륙의 여러나라에서 채택함. |

| | |
|-----------------------|--|
| 헌재 소수의견 | 오늘에 있어서 형벌사상은 19세기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달리 형벌은 응보가 아니라 범인의 개선, 교육 및 그를 통한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점에 있어서 형벌과 보호감호처분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응보형제도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생겨난 보호감호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필요없다. |
|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 |
| 문제제기 | |
| 헌재 다수의견 | 헌법 제12조에서도 '적법절차에 의한 보안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의 근거로 두고 있는바, 그 내용은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다. |
| 헌재 소수의견 | 적법절차란, 법치주의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은 그 성립절차가 합법적이고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이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확립되어온 여러원칙, 자연적 정의에도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리. 따라서 거듭처벌금지의 헌법규정에 반하는 보호감호는 그자체로 적법절차에 의한 보안처분에 해당될 수 없음. 그리고 누범이나 상습성 있는 범죄인등에 대하여는 형법과 특별법등에 누범가중 및 상습범가중규정등이 있어 법원이 그러한 법률에 따라 범죄인의 교육·개선에 부족함이 없는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교육·개선을 위한 보호감호라는 미명아래, 아님만 다를뿐 자유형과 같은 내용의 처벌에 다른없는 보호감호제도를 두어 형집행후 중첩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위협적이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의 이념(헌법 제10조)에 반하는 바, 적법절차에 위배. |
|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 |
| 문제제기 | 집행방법이나 집행내용, 집행효과 등이 모두 형법상의 징역형과 차이가 없어(사회보호법 제42조에서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형법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 신체자유 제한이므로 이중으로 처벌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 헌재 다수의견 | 보호감호와 형벌이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사회복지권을 촉진하고 사회보호를 위해 헌법 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한 보안처분으로, 그 본질과 추가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하여 선고해도 이중처벌아님. |

| | |
|---------|--|
| | 사회보호법 42조에서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둘다 신체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고, 일정기간 격리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 없으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집행절차에 행형법을 준용한다는 의미이고,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에 의하면 집행 장소, 처우(의복, 노동과 보수, 집건, 서신, 두발, 교육, 근로, 직업훈련) 등에 있어 자유형의 집행과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문제 없다. |
| 현재 소수의견 | 헌법 13조 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은, 형벌이건 보안처분이건 명칭불문하고 동일범죄에 대해 2중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이름이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범죄인에 대해 고통을 가하는 것이면 이에 해당. 보호감호의 주된 내용도 감호대상자를 보호감호시설에 격리수용하여 감호, 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심신단련과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을 과하는 것이어서 자유형의 내용과 실질적인 차가 없다. 결국 과거의 전과 때문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형을 복역하고 다시 보호감호라는 이름으로 자유형을 복역하는 것에 다름이 없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
| | 재범판단 및 적법절차 위반 여부 |
| 문제제기 |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감호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히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감호의 집행을 개시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사건에 대한 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보호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시기 설정이 잘못된 것이어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된다. |
| 현재 다수의견 |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은 결국 법원에 의한 사후 예측판단작용인 이상, 절차상 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 예측판단의 시점이 피고사건의 심리종결시점으로 된다하여 반드시 보호감호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보호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는 사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집행개시 후 매 1년 가출소 여부를, 가출소한 감호자에 대해 매 6월 집행면제 여부를 심사결정하는바, 보호감호집행개시후 그 성향이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사거칠 수 있으므로 문제 없음. |
| 현재 소수의견 | 형의 선고시에 판단해야 할 재범의 위험성은 판결선고시가 기준으로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시점이 기준으로 되어야 하는데, 법원에 집행종료시라는 장래의 시점에서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결시에 미리 점치도록 하는 것을 무리한 요구이고, 필경 형의 집행으로 |

| | |
|---------|--|
| |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이미 교정되었을 수도 있는 사람을 무고하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주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인권이 침해도리 우려가 있어 적법절차 원리에 반함) |
| | 구체적 집행방법 및 기본권 침해여부 |
| 문제제기 | 보호감호제도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 개선을 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호감호시설이나 집행방법의 현실을 보면 1.6평 남짓한 협소한 방에 4-5명씩 수용하고 방안의 식구통에서 밥을 받아 먹게 하는 등 기타 여러 면에서 교육, 개선은 커녕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는바, 보호감호의 집행실태를 볼 때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깃잡는 위헌적인 계속적 자유박탈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다. |
| 현재 다수의견 | 2.607평의 협소한 방에 5-8명씩 수용하는 등 시설이나 처우방법 등이 열악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가 재정형편이 허용되는 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나, 보호감호집행의 현실적인 여건이 위와 같이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특수한 교육·개선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보호감호제도 그 자체가 이로써 바로 위헌적인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
| 현재 소수의견 | 2.607평의 방에 5~8명을 수용하고 있다면 1인의 방점유면적이 겨우 0.52평 내지 0.32평 남짓 밖에 되지 아니하여 침식과 기거에 매우 고통스러운 좁은 면적이어서 그 점만으로도 피감호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있는 것임. 그리고 청구인들이 방이 너무 비좁다고 지적한 것은 비인간적인 보호감호집행실태의 한가지 예로서 지적하였을 뿐, 보호감호집행의 실태가 전반적으로 비인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밖의 점에 대하여 일일이 지적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로서는 마땅히 집행방법의 전반에 걸쳐 과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만약 집행방법이 부당하다면 집행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더 이상의 조사를 아니한 채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피감호자의 인권문제에 대하여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아니한 나머지 그 직무를 포기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 | 재판청구권 침해여부 |
| 문제제기 | 법원에게, 재범의 위험성에 비례한 감호기간을 선고할 수 있는 범위의 재량을 배제하여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
| 현재 다수의견 | 재범의 위험성은 장래에 다시 범조를 범한 개연성을 의미하므로, 장래의 |

| | |
|---------|---|
| | <p>예측에 따른 불확실성을 가지고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보안처분을 선고하는 때에 미리 재범의 위험성의 소멸시기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간오하여, 본질상 집행단계에서 기간이 확정되는 부정기임을 면할 수 없다.</p> <p>단, 사회보호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p> |
| 현재 소수의견 | <p>재범의 위험성에 비례한 감호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법원의 재량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p> |

4. 본질적으로 보호감호제도가 필요한가

가. 형사정책적 배경

원래 상습범죄자와 특별히 위험성있는 범죄자에 대한 보호감호제도는 응보형제도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19세기의 형벌제도의 근본원리인 응보형사상의 이념에 따르면 형벌은 범죄행위의 피해정도에 비례하여야 하고 아무리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경우라도 또 아무리 형벌이 행위자의 개선에 부적당한 제도라도 그러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범죄의 피해정도에 따라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 아래에서는 범죄자의 반사회성에 맞지 않는 양형(量刑)과 행형제도의 결함등으로 인하여 누범등 상습범죄자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형벌제도만으로써는 사회방위를 다할 수 없어 이러한 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교육형적인 보호감호제도가 필요하였던 것이다¹.

나. 실질적인 필요성 대하여

(1)사회보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

¹ 그런데, 오늘에 있어서의 형벌사상은 형벌은 응보가 아니라 범인의 개선·교육 및 그를 통한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형벌제도도 형벌의 목적을 응보에 두지 않고 교육을 통한 사회방위에 두고 있음은, 양형의 조건을 규정한 형법 제51조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나 범행의 결과보다는 오히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을 보다 중요한 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행형의 목적을 규정한 행형법 제1조에 징역형 등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명백하니, 이러한 이념 아래에서는 형벌과 보호감호는 이를 구별할 아무런 필요가 없고, 본질에 있어 똑같은 교육형이므로 응보형제도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생겨난 보호감호제도는 더 이상 이것을 두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귀(교정주의)와 사회보호(사회방위)를 병렬적인 관계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입법기술상의 문제이고 실질에 있어서는 '사회복귀를 통하여 사회를 보호한다'는 논리구조를 저변에 깔고 있다. 그러나 '형벌'도 기본적으로 사회방위와 교정주의를 그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다.

(2)그렇다면, 이외에 특별히 보안처분의 필요성의 근거로 주장되는 것이 무엇일까? 보호감호제도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역사적 배경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형벌의 한계성(피해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과 특별한 위험성으로 보았다.

그리고, 처분대상자의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일차적인 사회방위를 위해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개선, 교화작업을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실행하며 대상자를 범죄적 주변환경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 보호감호 처우의 내용

보호감호는 사회내 처우가 아니라 시설내 처우이므로, 격리가 처우의 가장 기초적 내용이고, 나아가 일정 종류의 노동과 규율강제, 교육이 부과된다.

특히, 처분실행의 중점은 대부분 규율강제에 놓여진다. 엄격한 규율에의 복종이, 시설내 질서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규율준수의 습성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강요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설내 질서유지와 규율준수의 습성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정해진 일과표에 의한 획일적인 생활이 강요되고(감호자 준수사항과 재소자 준수사항이 동일하다고 함), 들쭉, 노동이 전혀 필요없는 경우에도 규율강제를 위해 처분대상자의 육체를 고달프게 한다는 차원에서 비생산적인 육체적 훈련(정신교육 등)이 부과된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은 매우 미비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라. 보호감호제도 자체의 문제점

(1)감호자나 그의 식구들 모두, 보호감호 자체에 대해 상당한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보호감호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승복할 수 없다고 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사회에 반발심이 생겨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다. 당초, 보호감호는 책임주의라는 형벌의 한계 때문에 고안된 것이고, 사회복귀(교정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방위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보호감호제도 자체가 갖는 한계 및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2)교정주의에 대한 비판

우선, 보호감호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사회복귀' 즉 '교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는 범죄자 중에 형벌로 처리가 부적합 자들이 있으니, 별개의 처분체계로 사회복귀를 시키는 것이다(형벌자체는 응보와 위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를 통해서도 교정의 이념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형벌 처리의 부적합과 제법의 위협성의 원인으로, 도덕적 결함과 사회적응력의 미비를 많이 이야기한다. 결국, '사회복귀' 강조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보호감호는 실행에 있어, '사회복귀' 즉 '교정'의 이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응보나 위하까지 나타난다(실제 일반인에게 보호감호가 더 공포스러움). 그리고 범죄의 원인에는 사회구조적인 측면도 있는데, '교정' 이데올로기는 철저히 범죄해결을 범죄자 개인에게서만 찾으려고 하여, 범죄문제를 범죄자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해결한다든지, 나아가 사회의 범죄배태적 속성을 제거함으로써 범죄의 감소를 추구하려는 방법은 일단 교정처우 방법의 방향설정에서 배제된다. 2002년 법무연감에 의하면, 감호자의 50.5%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고, 감호자의 55.7%가 입소전 하층의 경제적 수준에 있었으며, 절도로 입소한 감호자가 전체 7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감호소에 있는 감호자 대부분이 사회 경제적으로 무능력자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법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을 범죄로 이끈 빈부격차 등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보호감호제도는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범죄자 측면만 강조하고 기반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 기반사회의 가치질서와 규범체계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정의 목표 및 교정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처분실행자의 관점에서 수립되는데, 이것이 일반 규범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규범 역시 규범준수자와 규범위반자 간의 상호합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규범준수자 집단의 가치기준에 의해 독자적으로 정해지고 규범위반자의 가치는 배제된다는 점에서 교정처우의 일방성이 드러난다.

그리고 범죄의 원인을 도덕적 결함과 사회적응력의 미비로 보기 때문에, 보호감호 내용 역시 철저한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따라서 피교정자 자신의 자아성찰이라든가 인간성 회복은 일차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되지 못하고, 피교정자의 행동이 규범준수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것에만 노력을 집중한다).

(3) 사회방위에 대한 비판

보호감호는 상습범, 조직범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존의 사회질서 유지를 목표로 한다. 보호감호에 있어서 사회방위는 중요한 목표이며, 현실적으로 보호감호제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호감호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사회방위에서 사회란 처분대상자를 제외한 사회로써, 대상자가 사회에 없어야 사회가 평안해 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방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협성을 부각, 선전하는데, 범죄가 질적, 양적으로 심각해진다는 점을 통계, 자료 등을 중심으로 주장, 선전하고, 범죄문제는 곧 법과 질서의 위기 내지 도덕의 타락을 암시하는 지표라고 선전하고 도덕성의 공황현상을 개탄하며, 사회질서 전체의 위협을 주고 있다고 선전한다. 위협성이 부각될수록 사회일반인은 비인간적처우라도 감행하라고 요구하고, 이런 기반 위에 국가가 범죄인에게 격리와 감시 처분을 부과하면 사회일반인은 국가의 동 처분으로 말미암아 마음놓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².

권력자는 자기를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인 범죄와 싸움을 하면서 이기기 위해 더 큰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사회일반인에게 선전하고, 비인도적 처우는 국가가 범죄의 위협으로 사회일반인을 위협하고 그 결과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인에게 가해지는 처우의 내용에 대해 침묵하게 하는 논리조작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송보호감호자들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매우 공포하고, 폭력성이 강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청송보호감호소 감호자들의 75%가 절도범이다.

(4) 한계론의 비판

한계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책임무능력자나 한정책임능력자에게는 형벌의 부과가 형법체제상 배제되고, 상습범, 누범 등에 대해서는 형벌이 현실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습범, 누범 등에 대해 형벌이 무력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형벌 자체에 문제가 있다. 형벌의 실패를 의미하는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형벌이 이념적인 면에서 응보 및 위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방법 면에서 국가공권력의 강제적 행사를 본질로 하여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보안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²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감호는 당초 정권유지를 위해 '사회정의'라는 헛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에, '흉악한' 사람을 만들어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것으로 보호감호는 그 기능을 다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흉악한 인간'들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없었고, 그들에 대한 처우 역시 그들의 '흉악성, 폭력성'을 강조할수록 더욱 억압적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보호감호제도는 피보호감호자를 교육,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사회로부터 추방하고 외부와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시설내 처우인 보호감호제도가 필요성보다는 그로 인한 인권 침해가 더 중대하고 실제 집행면에 있어서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내 처우로서의 보호감호제도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보호감호제도는 빈부격차의 해소, 비민주적인 정치체계의 개선 등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개인에게 전부 떠넘기고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을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의 빈곤층 사람들을 위하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5. 현행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

가.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

‘법률과 적법한 절차’란 법치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은 성립절차가 합법적일 뿐 아니라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이념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확립되어온 여러 원칙을 물론 자연적 정의에도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그런데,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성립절차가 합법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성립절차상의 문제

(1) 사회보호법은 1980. 12. 18.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그런데 위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의해 구성되었는데, 이 법을 제정한 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보호법도 헌법과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기관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므로, 성립절차가 합법적이지 않다.

(2) 그리고 사회보호법은 당초 군사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제정된 것이고 그 때 청송보호감호소가 설립되었기에, 법률이나 청송보호감호소 시설 자체에 재사회와의 이념보다는 억압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사회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당초 감호자를 수용하는 보호시설이 갖추어야 할 기능이나 구조, 운영방침 등의 제도적 장치는 물론 감호자 수용과 처우, 출소후 사후 대책등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오직 ‘격리’위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제정된 사회보호법이 5차례 개정되었으나 내용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전혀 없었고, 시설이나 운영면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었는바, 현재까지도 보호감호가 재사회화보다는 ‘억압’과 ‘격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내용상의 문제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1) 보호감호는 교육, 개선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보호감호소의 생활은 사회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일반 사회 생활과 차이가 없어야 하며 가족이나 일반 사회인과 접촉이 쉽고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재 감호소는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 사회에 대한 반항심만 키우고 있다. 그리고 피보호감호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또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나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고, 수감 중 번 수입을 가족에게 일부 보낼 수 있어야 하고 출소할 때에는 저축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호감호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반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보호감호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감호는 당초 정권유지를 위해 ‘사회정의’라는 헛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에, ‘홍악한’ 사람을 만들어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것으로 보호감호는 그 기능을 다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홍악한 인간’들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없었고, 그들에 대한 처우 역시 그들의 ‘홍악성, 폭력성’을 강조할수록 더욱 억압적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보호감호제도는 피보호감호자를 교육,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사회로부터 추방하고 외부와 단절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보호감호제도는 형의 집행이 아니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감호처분을 할 때 응보적 성격은 없어야 하고 오직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범위내에서 감호자의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행의 현실을 보면, ‘사회복귀’와는 무관하게 서신을 검열하고, 동료나 교도관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용변을 보아야 하며, 감시탑, 감시등, 철창, 안에서 열 수 없고 밖에 없애서만 열리는 방문 등 사생활의 비밀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2.607평의 좁은 공간에서 약 4-6명의 인원이 함께 냉난방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하며 운동시간도 제한되는 등 사회복귀와 무관하게 감호자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고 있으며, 선거권까지 제한되고 있다.

이미 행위에 따른 책임의 범위내에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사람에게 ‘사회보호’라는 목적으로 본래의 형량보다 더 길고 가혹한 보호감호처분을 하는 것은, 사회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의 추상적인 안전을 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자를 격리하는 것이므로, 이는 감호자의 존엄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사회보호법은 감호자를 민주주의 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법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감호자의 선거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호법 제38조 제2호에서 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감호의 집행을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보호감호가 형의 집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선법에서 선거권을 제한한 형의 집행자와 동일하게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보호감호가 본질적으로 형의 집행과 동일함을 인정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형의 집행이 끝나고 사회복귀를 위해 재사회화 과정에 있는 감호자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4)감호자의 기본권 보장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면서, 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근로보상금의 예를 들면, 근로보상금은 감호자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이자 출소 후 생활정착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2. 12.까지 근로보상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 보상금 | 4,800원 | 3,900원 | 3,100원 | 2,400원 | 1,900원 | 1,400원 | 1,100원 |

대부분의 감호자의 평균작업등급이 4-5등급인바, 월 25일 작업으로 계산하면 월 47,500원에서 60,000원의 수입만 생기게 된다. 이것도 작업능력이 부족하여 정량작업을 하지 못하면 월 10,000원에서 20,000원도 받지 못하는 감호자가 있고, 6-7급의 감호자가 작업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월 1만원 미만의 근로보상금을 받기도 한다고 한다. 2002년 감호자의 평균 예탁금이 330,00원 정도라고 한다.

참고로, 2003년에는 위 근로보상금이 인상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 보상금 | 5,800원 | 4,700원 | 3,800원 | 2,900원 | 2,300원 | 1,700원 | 1,400원 |

이와 같은 근로보상금의 수준에서는, 사회정착금으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다.

(2)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

1)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중의 처벌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그런데 청송보호감호소의

시설위치와 운영 및 집행의 내용이 교도소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사회보호법 제42조에서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청송보호감호소가 지역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곳에 위치해 있어 사회적응훈련이 불가능(통근작업이 불가능함)하고 교정시설의 경비 등급 역시 최고의 등급인 초중구급시설과 동일하며, 시설 운용의 담당자도 법무부 교정국 산하의 교정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3)그리고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처우를 수형자와 동일하게 개선도에 따라 단계별로 완화하는 추진방법을 채용하고 있고, 감호자 처우의 기준이 되는 '피감호자분류처우규칙'이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의 내용과 동일하고, '감호자 준수사항'이 '재소자 준수사항'과 동일함. 또한 재소, 징벌, 의료 등 기본적인 처우를 수형자의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당한 처우에서는 수형자에 대한 것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작업의 경우 수형자에게는 외부통근작업의 기회가 주어지나 감호소의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으로 통근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외부종교지도자들의 활동이나 외부인사 참여가 역시 지리적 여건으로 교도소보다 열악한 형편이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감호자에게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초, 중, 고의 검정고시 과정과 독학사 고시 과정이 있는데, 운영면에서 보면 교도소의 경우 도심 근교에 위치해 있어 자원봉사 형태로 외부협력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호소는 외부강사들의 협력이 전혀 없다. 직업훈련 면에서도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타일, 미장, 목공, 자동차 정비, 양재, 정보기기운용, 워드프로세서, 보일러 시공 등의 기능사 양성과정이 있는데, 교도소의 경우 혁신 교육과정(정보처리, 컴퓨터 정비, 컴퓨터 그래픽 분야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감호소는 위와 같은 교육과정 도입이 안되고 있다. 특히 여성감호자의 경우에는 직원식당에서의 취사 이외에 별도로 작업이 없고, 직업교육 역시 미용이 전부인 상태이다.

4)보호감호가 형의 집행이 아니므로, 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교정국이 아닌, 보호국에서 시설 관리감독, 작업, 교육, 기술, 사회적응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호감호소의 보호시설관리, 운영, 감독, 교육을 모두 교정국에서 하고, 보호국은 가출소 심사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보호감호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형을 선고할 때 보호감호제도까지 같이 선고하고 있다. 따라서 수형기간 동안 '1급', '개선급 A', '개선가능자'의 판단을 받는 자도, 보호감호 집행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결국 보호감호가 재범위 위험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법원이 보호감호를 선고할 때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호감호 집행 기간 중 사회보호위원회가 가출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사회보호위원회가 감호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한 뒤, 가출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재범위 위험성은 보호감호의 요건, 즉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데, 헌법 제12조 제6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체를 구속하는 보호감호의 적부 역시 법원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무부에 소속된 사회보호위원회가 가출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감호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보호감호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법무부는 '감호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가출소 인원도 줄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실제 감호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감호가 당초 취지대로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호자들의 전과 비율이 높은데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첫째, 사회보호법 자체가 쿠데타 정권의 체제유지 방편으로 제정되어 위헌시비가 이어져왔고 대다수 감호자가 이에 대하여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출소하면서 보복심리로 발전하여 결국 재범으로 이어지고, 둘째, 감호소에서 행해지는 교육, 훈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출소하더라도 생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작업수당금이 매우 적어(많이 가지고 나와야 약 200여만원 정도 된다고 함, 출소할 때 평균 40여만원 가지고 나온다고 함) 생활정착금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재범의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셋째, 장기간 교도소와 똑같이 폐쇄된 시설에 갇혀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다보니 가족들(감호소측에 의하면 이혼율이 90% 정도 된다고 함) 또는 지인들과 멀어지고 세상 물정에도 어두워지는 등 사회적응 능력이 도태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6.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방향

가.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20년 동안 감호자들이 끊임없이 위헌성을 다투어왔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처우의 열악함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서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할 권한이 있는바, 사회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할 수 있고, 보호감호집행으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보호감호제도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밖에 없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내 보안처분인 보호감호 제도 자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헌법 제12조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안처분의 근거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안처분의 근거가 헌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습전과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를 반드시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내 처우가 '법률과 적법한 절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적법절차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그런데 이미 변정수 전 재판관이 주장하였듯이, 현재에는 형벌과 보호감호처분의 목적과 기능일 동일하기 때문에 보안처분 자체는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누범이나 상습성이 있는 자에게 이중으로 처벌을 하는 결과가 되어 적법절차에 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단지 현재 보호감호 집행 자체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보호감호처분의 역사적 배경, 기능, 지금까지의 결과, 정치권력이 보호감호처분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지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국가기관의 판단과 결정을 뛰어 넘어 인권적 측면에서 국가기관의 결정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법원 및 현재의 판단에 구애받지 말고 순수한 인권적 측면에서 보호감호제도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쓴소리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쿠데타 위원회에서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으로 폭력적으로 제정된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은 그 후 슬한 위헌논란과 인권침해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오늘날까지 곳곳이 건재해 왔다. 그러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올해 초 다른 여러 인권현안을 제쳐두고 사회보호법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인권위가 사회보호법 문제를 다루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의 문제의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활동계획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하나의 반인권 법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은 공론을 일으키거나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먼저 사회보호법 문제의 공론화에 대단히 소극적인 유현 상임위원의 인식과 자세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서 인권위와 태스크포스팀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점검하고,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유 위원 등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 참여자들은 '사회보호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진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 문제 - "구상 없다", "말한 단계가 아니다"...공론화에 소극적인 유현

-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의 문제의식과 향후 구상을 파악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유 위원을 두 번 방문했으나,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음
- 2월 10일 유 위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상이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함
- 4월 8일에는 "실태조사 이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변함
- 4월 11일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 세 번째 회의 후, 유 위원실로부터 <4월 14일 현재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 진행상황>을 정리한 글(붙임 자료 참조)을 받음
- 이에 4월 15일 유 위원에게 사회보호법 워크샵에 참석해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의 문제의식과 활동계획'을 발제해 줄 것을 요청
- 그러나 유 위원은 "입장이 정해진 것이 없어서 아직까지 태스크포스팀의 공식적 입장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제를 거부함. 다만 참석만 약속함
- "비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른 많은 이슈들 가운데 왜 사회보호법을 태스크포스팀 주제로 정했는지' 하는 문제의식과 향후 계획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함. 하지만 유 위원이 발제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음
- 사회보호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적은 현실에서,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은 자신의 문제의식과 활동계획을 적극 알려나가는 것은 당연하며 필수적인 일임
- 하지만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에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조차도 별다른 정보를 주지 못

했다는 (혹은 안 했다는) 것은

- 유 위원이 사회보호법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이나 활동계획이 없는 것이거나
- 아니면 자신의 문제의식과 활동계획을 외부로 공개하기를 꺼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는, 공론화와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 팀장으로서의 적절한 태도가 아님. 따라서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의 미래가 심히 걱정됨

□ 관점 - 인권옹호 vs 인권심판, 어느 위치에 설 것인가?

- 인권옹호와 인권심판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나, 둘 중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기본 출발점과 활동방식은 판이하게 차이가 나게 됨
- 인권심판의 결과로써 인권침해 여부는 확정되지만, 인권옹호 활동은 인권침해에 대한 확산에서 출발함. 따라서 인권심판 이후에만 인권옹호 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님
- 인권심판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사·연구의 결과'가 중요하지만, 인권옹호 활동은 공론을 촉발시킬 수 있는 '조사·연구의 과정'이 중요함. 인권심판은 정적이고 수동적인 반면, 인권옹호 활동은 역동적·능동적임
- 현재 인권위의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는 진정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인권심판적 위원회 기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자기 반성으로 인권위는 올해 중점기획사업과 주요인권현안을 선정하여 추진 위원회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인권옹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간헐적인 직권조사도 중요한 인권옹호 활동임)

- 태스크포스팀이 다루는 주제들은 이미 인권위 내부에서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판단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주요인권현안 중 왜 하필 올해 이 주제를 택했는가?"라는 질문에 인권위는 답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태스크포스팀의 목적은 팀에서 다루는 주제가 '인권침해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라는 확산 아래 이에 대한 '결론과 해결방안을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어야 함
- 물론 사회보호법 등에 대한 태스크포스팀과 인권위의 최종 판단은 불가피함. 하지만 이는 태스크포스팀 혹은 인권위 내에서의 논쟁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그래야만 인권위의 결정이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

□ 평가 -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 무엇이 문제인가?

- <4월 14일 현재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 진행상황>에 따르면, 1월 21일 내부 준비모임을 갖고 2월 17일, 3월 14일, 4월 11일 이상 총 3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음. 이런 추세로 보면 1달에 1번 정도의 회의를 하게 됨
- 그러나 이러한 회의주기는, 태스크포스팀의 활발한 인권옹호 활동에 대한 기대에 비추어

보면, 매우 느슨한 것임. 이는 인권위가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결정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이외에 별다른 활동계획을 내오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도 증명됨

● 보다 역동적인 인권옹호 활동을 위해서는 1주일에 1번, 적어도 2주에 1번 정도는 회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회보호법에 관한 태스크포스팀의 문제의식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음. 이는 사회보호법에 관한 공론화에 대해 태스크포스팀이 매우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드러냄. 현재 태스크포스팀이 긴장감있게 진행해야 할 활동은 사회보호법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호법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것임

● 이에 따라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은 지금이라도 당장 '사회보호법의 어떤 점이 인권침해인지', '반대논리가 무엇인지'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각각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또한 관계기관의 회신 등 사회보호법 관련 자료들에 대해 전면 공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함

● 현재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주력하고 있는 실태조사 활동도 그 폐쇄적 운영이 심히 우려됨. 현재 실태조사에 대한 준비는 태스크포스팀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인권단체 및 전문가들의 광범한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실태조사는 광범한 인력이 필요하며 조사내용에 대한 풍부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임. 따라서 워크샵, 간담회 등을 통해 인권단체 및 전문가들의 광범한 참여를 유도해야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사내용도 풍부해지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도 효과적으로 충원될 수 있음

●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은 "5월경 청송보호감호소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6~7월 기존 법제 비교연구 및 실태비교 연구를 통해 개선 시안 마련, 중간보고서 발표, 8~9월 청문회(공청회) 개최 통해 사회단체,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0월경 최종 시안 마련, 결과보고 및 공표"라는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이는 사회보호법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 매우 단선적으로 짜여진 계획으로 평가됨. 이러한 큰 흐름만으로는 사회보호법을 사회의제화 할 수 있는 계획으로 매우 부족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보호법에 관한 쟁점 및 문제들을 시급히 정리하며, 각각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함

● 이렇게 됐을 때 청문회(공청회)는 8~9월의 한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10월 최종시안이 마련될 때까지 수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임. 이는 지금까지의 계획이 얼마나 안이한 것인지를 보여주며, 때에 따라서는 전면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줌. 인권위법에 정해진 권한을 100% 활용해,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의 종합적인 활동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제언 -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에 바란다

●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은 '사회보호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확신 속에 사회보호법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극 공표해야 함. 그래야만 사회보호법에 관심있는 단체 및 개인의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는 사회보호법이 오늘날까지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보호법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사회적 무논의 때문임. 따라서 사회보호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론을 모으기 위해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은 인권위법 제23조에 규정된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함

● 먼저 사회보호법 피해자들을 유형별로 불러 청문을 실시해야 함.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불러 초기 사회보호법 시행시 피해실태를 파악하는 것, 현 청송감호소 수용자들을 불러 현행 사회보호법 시행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 청송감호소 출소자들을 불러 청송감호소 생활이 출소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 등 최소한 3차례의 청문회가 필요함

● 인권위가 사회보호법 피해자들을 직접 불러 청문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회보호법의 피해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효과를 가질 것임. 이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사회보호법의 문제점을 정리해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욱 생생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음. 특히 현 청송감호소 수용자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은 청문회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에 따른 교육적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임

●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은 사회보호법이 여론화되는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의견표명을 가능한 자제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보호법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장을 국민적 심판대 위에 올려놓아야 함

● 이를 위해서도 청문회 제도는 매우 유효할 것임. 또한 인권위법 제22조에 규정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권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만약 관계기관이 자료제출에 미온적일 때, 이를 공표함으로써 국민적 여론을 인권위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음. 우리는 지난 의문사위 시절 이런 경험을 한 바 있음

● 청문회 자리에서 인권위원들의 역할 또한 중요함.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인권위원들은 '듣기'만 하고 '묻기'는 하지 않았음. 이는 실질적인 '청·문'이 아님

● 인권위원들은 사회보호법의 여러 쟁점들을 미리 정리하고, 사회보호법 피해자,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청문회에 나왔을 때 예리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논점을 이끌 수 있어야 함. 특히 이러한 노력은 관계기관들을 불러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인권위법 제19조 8호에 규정된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또한 중요함. 인권위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입장표명과 활동범위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의 협력 없이는 국민적 여론을 효과적으로 형성해낼 수 없음

● 또한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반발을 정면돌파하기 위해서 인권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임. 하나의 반인권적 법제를 바꾸어낼 전략 또한, 수년 동안 사회보호법 폐지 투쟁을 전개해 왔던 인권단체들과의 논의 속에서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음

● 따라서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은 인권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 몇몇을 태스크포스팀에 결합시키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광범한 인권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야 함. 그래야만 보다 광범한 인권단체 및 전문가들을 자신의 동조세력으로 만들 수 있음

● 현재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에 결합한 인권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들도 인권위와 인권단체들간의 소통을 자신들이 대리하는 식으로 논의의 폭을 제한하지 말고, 인권위와 인권단

체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태스크포스팀 내에서 적극 요구함으로써 논의의 폭을 확대해야 함

- 인권위법 제24조에 규정된 방문조사권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적극 활용해야 할 권한임. 방문조사시 인권위원은 소속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도 있음

- 특히 인권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 정도에 따라,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은 청송감호소 수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음. 이는 전대미문의 커다란 사건으로, 방문조사의 결과는 교정당국 등 관계기관의 반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할 것임

- 그밖에도 인권위는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됨. 인권위법 제20조는 국가기관과의 협의권한을 정해 놓고 있음. 사회보호법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위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관계기관의 입장변화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사회보호법을 둘러싼 논쟁을 보다 빨리 종식시킬 수 있음

- 한편, 인권위법 제28조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의견개진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은, 사회보호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회보호법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은 곧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임

피보호감호자 실태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 왜 실태조사인가?

구금시설의 실태 조사에 있어서 책임 있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의 실태조사는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일반에게 많은 부분 닫혀 있는 대표적인 곳을 들자면 군대와 구금시설을 들 수 있는데 그나마 국방부는 요즘 들어 계속 자체 개혁안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구금시설 만큼은 아직도 개혁의 “7”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법무부 장관이 재소자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법무부의 공식 정책으로 실현되기에는 아직도 갈길이 멀기만 하다.

사회보호법의 문제에 있어서 민간단체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청송감호소”이다. 우리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대위” 역시 청송감호소의 문제를 가장 큰 실제적 문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청송감호소의 문제점과 폐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정확한 실태조사인 것이다.

그러나 구금시설의 특성상 청송보호감호소는 민간단체들이 세세한 조사를 하기에는 아주 견고한 곳이었다. 우리는 공식적인 제안을 통해 청송감호소의 실태를 보고 싶다 이야기했었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감호소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장이나, 작업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었지만 거부당하기가 수차례였다. 실제로 지난 4월 20일 청송 제2감호소를 방문하여 작업과장에게 이곳 출력공장의 현황과 출력수의 수, 근로보상금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하라는 이야기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이번 실태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의 직원들과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들이 직접 해야하고, 이번 기회에 청송보호감호소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보고서”가 작성되기를 기대한다. 실태조사에 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더 나아가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정리되기를 기대한다. 그 가운데 실태조사는 보호감호소가 일반 교도소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고, 그 조사와 연구 결과를 통해 국민에게 보호

감호제의 폐단을 알려내어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보호감호소의 실태 조사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감호자들과의 1대1 심층 면접을 통한 재범 등의 원인과 대책을 밝혀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감호소를 나가서도 다시 재범을 하여 감호소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과연 없는가. 이 중에는 보호감호소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고, 출소자들이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이들이 사회에 합류 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 역시 커다란 이유일 것이다. 이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것이기에 이번 실태 조사에서 이러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의 중요성

1. 보호감호소가 일반 교도소와 다르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2. 국가인권위가 직접 피감호자들을 만나 그들의 문제의식을 들어야 한다.
3. 심층 면담을 통해서 이들이 왜 다시 감호소로 돌아와야만 하는가, 범죄의 원인과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책은...
4. 구금시설의 폐쇄성을 감안하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

□ 국가인권위의 설문조사 내용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들

1. 교도소와 실제로 다른 것은 무엇인지...
2. 근로보상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3. 외부교통의 문제(귀휴의 횟수, 사회견학의 실태 등등)
4. 감호소내의 각종 직업 교육과 학과과정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 조사 방식

1. 통계나 조사자료에 대한 연구는 외부 용역을 줄 수도 있으나, 감호소에 대한 조사작업은 국가인권위에서 직접 여러 번에 걸쳐 해야 한다.
예) 국가인권위 직원과 인권단체의 활동가들과 함께(100명정도)
여러 차례 심층 면접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피감호자 전원 대상)
2. 조사 및 연구 내용이 계속 공개되어야 하고 민간단체들과의 Feedback 필요하며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1) 사회와의 접촉 -> 외부교통권의 문제

- 외박, 부부만남의 집, 귀휴, 사회견학 등의 횟수와 인원, 사유

2) 재범 위험성의 제거 및 사회복귀를 촉진 -> 작업 및 직업훈련, 학과 교육

- 출역장의 종류와 구별, 각 출력장 당 출력수 현황(예: 1공장 쇼핑백 총원 45명)
- 작업장 및 학과교육에 있어서 본인의 의지 반영 여부
- 피감호자의 요구시 상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의 여부

3) 책임감과 자율성 등의 부여

- 감호소의 운영에 있어서 피감호자의 의견 수용 여부
- TV시청, 라디오청취에서의 피감호자 의견 반영 여부

4) 분류처우 및 가출소

- 미징역 피감호자의 수, 누진 등급제의 적용에 있어서 매달 누진점수를 부여받는 비율 (예: 1공장 총 출력수 50명중 10점 3명, 8점 17명, 6점 30명)
- 재분류의 절차와 방식
- 가출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각종 포상에 있어서의 기준과 그 반영(가출소심사나 처우 등)

5) 일반 생활

- 도서, 신문, 자변의약품의 구입의 자유로움 여부
- 1인기준 식비와 메뉴의 다양함 여부
- 의료시설에 대한 상세한 보고
(지난 3년간의 1인당 의료비, 자변의약품 구입 비용, 외부병원 진료 현황, 의사의 직접 진료 비율, 의사 1인당 하루 진료자 수, 상시적 진료가 가능한가, 일반진료의 치과, 안과 진료가 가능한가 등등)
-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의 종교활동 보장 여부
- 사망의 냉·난방 시설, 화장실 및 세면장의 시설확인

헌법소원제기 및 감호소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요청 편지

안녕하십니까?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소속 이상희 변호사입니다.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는 지난 3월 11일 26개 민간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이래 사회보호법의 반인권성과 위헌성을 알리며 이 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는 사회보호법 폐지 투쟁의 일환으로 5월 1일 현재 청송감호소 감호자 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헌법소원청구를 대리하고 있으며(3월 11일 헌법소원 제기), 다른 감호자분들의 헌법소원도 제기하고자 지난 4월 한달간 위임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헌법소원의 취지에 동감하며 위임장을 발송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의 진행과 관련해 필요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송된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기할 헌법소원 청구의 내용은 이미 지난 3월에 제기된 헌법소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감호소의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과 작업상여금의 기준이 위헌이라는 것, 그리고 서신검열이 위헌이라는 것 등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이 '보호감호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다루지 않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근까지 '보호감호제도' 에 대해 계속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보호감호자체의 위헌결정을 받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며, 이러한 결정은 향후 '보호감호폐지' 투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저를 비롯해 박찬운, 장유식, 박민재 변호사 외에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회 등이 함께 수고해주실 것이며, 이 외에도 많은 변호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내주신 위임장이 제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한결' 의 위임장이다보니 마치 '법무법인 한결' 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교정역사상 유례없는 소송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겠기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소송 대리인을 좀 더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동봉한 질의서 맨 끝에 '헌법소원 청구 소송을 법무법인 한결 이외에,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도 위임합니다' 라는 문장을 다 시금 기재해 발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지와 함께 드린 질의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하는 기초적 사

실관계입니다. 따라서 질의서 작성 시 어려우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서는 신속한 자료분석 및 소송제기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발송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활동이나 소송과 관련한 문의는 공대위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유해정) :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3층 02-741-5363/ 천주교인권위(김덕진):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02-777-0643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분들의 건강을 바라며, 소송과 관련한 진행사항은 추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2003. 5. 2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상희 변호사 드림

추신: 질의서는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꼭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35-934 강남구 역삼동 825-33 테헤란 빅딩 6층 이상희변호사]

<2003년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피보호감호자 질의서>

귀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가족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는 매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질의서는 헌법소원 시 사용되는 것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
|---|--------|----|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 외부연락처(주소, 전화) (서울시 종로구*** / 전화 02-741-***) | | |
| 감호를 선고받았을 때와 죄명, 형기 (예: 1999년/ 절도/ 3년6월) | | |
| 감호전과(경력)는? (예: 채법 시 89년 1차 감호/ 96년 2차 감호) | | |
| 전체 전과 및 내용, 형기 (예: 99년 절도로 3년 복역 후 만기출소, 01년 절도 2년, 보호감호) | | |

1.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1) 전혀 다니지 않았다
- 2) 초등학교 중퇴
- 3) 초등학교 졸업
- 4) 중학교 중퇴
- 5) 중학교 졸업
- 6) 고등학교 중퇴
- 7) 고등학교 졸업
- 8) 대학교 이상

1-1. 고등학교 중퇴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분만 답해주세요 학교를 위와 같이 다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집안의 경제형편상
- 2)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 3) 학교에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아서
- 4) 학교 생활 중 범죄를 저질러 구속됨
- 5) 기타()

2. 감호소에 들어오기 전(구속 전) 결혼상태는?

- 1) 미혼
- 2) 동거상태
- 3) 결혼했음
- 4) 결혼은 했지만 별거상태
- 5) 이혼상태
- 6) 사별

2-1. 기혼자 분들은 감호소 생활 중 이혼했거나 이혼 소송을 했던 경험이 있나요?

- 1) 예
- 2) 아니오

3. 감호소에 들어오기 전(구속 전) 경제수준은?

- 1) 상
- 2) 중
- 3) 하

4. 감호소에 들어오기 전(구속 전) 당신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고 있었습니까?

- 1) 부모
- 2) 맞벌이
- 3) 본인
- 4) 자녀
- 4) 배우자(남편 혹은 아내)
- 6) 기타()

5. 감호소에 들어오기 전(구속 전) 어떤 직업(일)을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6. 감호소에 들어오기 전(구속 전) 직업(일)이 있었다면 월 수입은 얼마였나요?

- 1) 50만원 미만
- 2) 50~100만원
- 3) 100~150만원
- 4) 150~200만원
- 5) 200~300만원
- 6) 300만원 이상

7. 감호소에 들어오기 전(구속 전) 직업이 있었다면 종사기간은?

- 1) 1년미만
- 2) 1년~3년미만
- 3) 3년~5년미만
- 4) 5년이상

8. 감호소에 들어오기 전(구속 전)에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주세요? (예: 미용사, 요리사, 증장비기사 등)

9. 감호소에 들어오기 전(구속 전) 직업이 없었다면 그 이유는?

- 1) 부모나 배우자가 생계를 책임짐
- 2) 몸이 불편해서
- 3) 일은 하고 싶었지만 취업이 안돼서
- 4) 직업(일)에 필요한 기술이나 돈이 없어서
- 5) 일을 하는 게 싫어서
- 6) 기타()

10. 현재 감호소에서 하고 있는 일과 그 종류는?

- 1) 작업(종류와 등급, 보상금 내역)
- 2) 직업훈련(훈련 종류와 보상금 내역)
- 3) 교과교육(교육 종류와 보상금 내역)
- 4) 관용작업
- 5) 기타
- 6) 아무 일도 안함

10-1. 당신은 현재 감호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2) 만족한다
- 3) 보통이다

- 4) 불만족스럽다
- 5) 매우 불만족스럽다

10-2. 10-1과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 1) 예
- 2) 아니오

11. 외부에서 정기적으로 영치금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11-1. 있다면 누가, 얼마정도의 기간, 얼마를 동안 넣어주십니까? (예: 가족이 매달 3만원씩, 친구가 3달에 한번정도 2만원씩)

- 1) 5만원 미만
- 2) 5~10만원 사이
- 3) 10~20만원 사이
- 4) 20~40만원 사이
- 5) 40~50만원 사이
- 6) 50만원 이상

11-2. 지난 한해동안 외부에서 받은 영치금은 얼마나 됩니까?

- 1) 2만원 미만
- 2) 2~4만원 사이
- 3) 4~5만원 사이
- 4) 5~7만원 사이
- 5) 7~10만원
- 6) 10만원 이상

11-3. 감호소 생활 중 한달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 1) 운동화, 내의 등 생활품 구입비
- 2) 빵, 음료수 등 간식 구입비
- 3) 의약품 구매 및 병원비
- 4) 도서, 책, 우표, 신문구독료 등
- 5) 기타

11-4. 가장 큰 지출 내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 1) 운동화, 내의 등 생활품 구입비
- 2) 빵, 음료수 등 간식 구입비
- 3) 의약품 구매 및 병원비
- 4) 도서, 책, 우표, 신문구독료 등
- 5) 기타

11-5. 감호소 생활 중 현재까지 저축한 돈은 얼마나 됩니까?

- 1) 10~20만원
- 2) 20~50만원
- 3) 50~100만원
- 4) 100~200만원
- 5) 200~400만원
- 6) 400만원 이상

12. 당신은 직업 및 직업훈련을 통해 배운 내용이 출소 후 직장 구하거나 돈을 버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12-1과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 1) 예
- 2) 아니오

13. 당신은 앞으로 출소하면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13-1. 출소 후 돌아갈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 1) 아내와 자식이 있는 내 집
- 2) 부모님 집
- 3) 형제자매 집
- 4) 자식집
- 5) 친구집
- 7) 기타()

14-1. 출소 후 돌아갈 곳이 없다면 어디로 갈 생각이십니까?

- 1) 갱생보호시설이나 사회복지단체시설을 찾아서
- 2) 숙박업소(여인숙, 여관 등)에 일단 머무를 것이다
- 3) 역이나 정류장에서 노숙이라도 할 생각이다
- 4) 기타 ()

15. 감호소에 들어오기 전(구속 전) 가족과의 관계는?

- 1) 매우 화목하였다
- 2) 화목한 편이었다
- 3)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 4) 좋지 않은 편이었다
- 5) 매우 사이가 나빴다

15-1. 지난 한해동안 가족과 접견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1) 없음
- 2) 1회
- 3) 2회
- 4) 3~5회
- 5) 5~10회
- 6) 10회 이상

15-2. 가족 접견횟수가 5회 미만인 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 1) 가족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
- 2) 가족이 없거나 가족 등이 노모, 어린 자식 등이어서 딱히 접견 올 가족이 없다
- 3) 청송의 지리적 여건상 접견 오기가 쉽지 않다
- 4) 접견 올 때 드는 차비 등의 비용이 부담스럽다
- 5) 기타()

16. 출소 후 가족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 1) 구속 전보다 더 잘해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 2) 입소전과 다름없이 대할 것이다
- 3) 전과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 4) 인간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 5) 기타()

17. 출소 후 당장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 1) 원래 갖고 있던 내 재산이 있다
- 2) 부모 또는 처자식의 도움
- 3) 친구 또는 선후배의 도움
- 4) 사회복지시설이나 갱생보호소에 의탁할 예정
- 5) 바로 일자리를 구할 생각
- 6) 기타

18. 출소 후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18-1. 출소 후 죄를 저지르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그 이유는?

- 1) 취직이나 장사를 할만한 기술이나 돈이 없어서
- 2) 구속되기 전에 어울리던 친구나 동료들을 다시 만나기 때문에
- 3) 범죄충동을 이겨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4) 쉽게 돈을 버는데 익숙해져서 힘든 일은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5) 기타()

19. 보호감호 생활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데 도움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19-1. 보호감호 생활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안되었다면 그 이유는?
()

20. 출소자들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해주세요)

- 1) 직장알선
- 2) 출소 후 생활에 필요한 일정금액의 지원
- 3) 취업하기 쉬운 감호소 내 직업 훈련 실시
- 4) 감호자 적성에 맞는 감호소내 작업장 배치
- 5) 학과교육의 확대 실시
- 6) 감호소내 종교활동의 강화
- 7) 감호자와 상담직원의 지속적인 상담
- 8) 기타()

20. 감호소 수감 시 귀휴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0-1. 귀휴를 가본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모두 고르세요)

- 1) 집안의 경조사 (혼인, 사망, 회갑 등)
- 2) 각종 대회 및 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입학식 등 포함)
- 3) 출소 전 취업준비를 위해
- 4) 사회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 5) 기타()

21. 감호소 수감 시 사회견학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1-1. 사회견학을 나가본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은?
()

헌법소원 위임과 관련해, 동봉한 편지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송대리인을 좀 더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반대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헌법소원청구 소송을 법무법인 한결 이외에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도 위임합니다"라는 문구를 밑에 다시 한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필기재>

서명

22. 감호소에서 가출소 심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2-1. 가출소 심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심사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22-2. 가출소 심사가 불공평하다면 그 이유는?(모두 고르세요)

- 1) 죄명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있다
- 2) 가출소 심사가 매우 형식적이다
- 3) (가출소)심사관이 매우 편파적이다
- 4) 가출소 심사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을 제출하기 어렵다
- 5) 기타()

23. 보호감호소의 처우 가운데 가장 큰 불만은?(구체적으로)

()

2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

-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요 참여정부, 사랑해요 대한민국"

법무부

우427-720/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 /전화 02-503-7062 /전송 02-503-7068
보호과 과장 김현정 ~~김사 이용주~~ 담당자 강병호

문서번호 보호61306-440

시행일자 2003/05/07 (1년)

공개여부 (공개)

수신 권보상 귀하

참조

제목 진정에 대한 회신

| | | | | |
|-----|----|--|-----|--|
| 선람 | | | 지시 | |
| 접수 | 일자 | | 결재 | |
| | 시간 | | | |
| 처리과 | 번호 | | 공람 | |
| | | | | |
| 담당자 | | | 심사일 | |
| 심사자 | | | | |

1. 먼저 권보상 씨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법무부에 제출하여 교정국으로부터 보호국으로 이첩된 (2003. 4. 21. 보안일 61425-876호) 민원서신에 대한 회신입니다.

3. 귀하께서는 청송감호소 감호자들은 강제성을 띤 징역형을 마친 자들이므로 사회보호법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게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감호소 운영이 개선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어야 하며, 사회보호법 제42조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형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여 형벌을 선고받은 자에게 적용하는 법을 보호처분자들에게 준용토록 하고 있어 모순이 있으니 개정되어야 하며, 감호자들의 소망인 범죄자로서의 습벽을 고칠수 있는 환경적 개선과 더불어 교화 프로그램을 실질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시면서 그 방안으로

보호처분을 받은자는 형기가 종료되면 2년간은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두 가지 정도를 숙련시키고, 3년차에는 6개 광역시에 있는 구치소, 교도소에 분산 수용시켜서 1년동안의 수용보호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업체에 취업시켜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임금을 저축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기능훈련을 받지 못하는 연령층의 노약자와 또는 직업훈련을 원하지 않는 감호자들의 임금도 역시 교도소의 외부통근자 임금 수준을 유지하며, 일일 8시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구

조직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주셨습니다.

4. 귀하의 의견을 향후 업무 수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전결 과장 김현정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서번호 : 03-05-26

수신 :

참조 :

발신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요청

날짜 : 2003년 5월 15일

문의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3 / 016-706-8105

1. 언제나 사회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늘 개혁적인 사고로 국민의 편에 서시는 의원님께 늘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2. 저희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회보호법폐지 공대위)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목표로 지난 3월 11일 26개 민간단체의 참여로 출범하여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3. 저희 사회보호법폐지 공대위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문제를 놓고 이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하시고, 관심이 있는 제 사회인사를 모시고 보호감호제도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함께 논의 해 보고자 합니다.
4. 이 토론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있는 분이 꼭 참석하시어 사회보호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계획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여부 확인은 위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03년 3월 11일 22개의 시민·인권 단체들이 모여 사회보호법의 위헌성과 인권침해 요소들을 알려내어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 위해 출범한 연대기구입니다. 현재는 총 26개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1 활동경과

1. 2002년 4월과 10월 새차레에 걸쳐 청송감호소내 피보호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폐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
2. 2003년 2월 26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9개 인권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 폐지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3. 2003년 3월 11일 22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
4. 2003년 4월 10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청송 제2보호감호소를 공식방문.
2차 헌법소원을 위해 위임의사를 밝힌 피감호인 600여명의 위임장 접수.
5. 2003년 4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채신을 위한 열린회의와 함께 Workshop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개최.
6. 2003년 5월 22일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

공대위는 이후 지역 순회 토론회, 2차 집단 헌법소원, 법무부장관 면담, 국회의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성>

* 참여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다산인권운동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세사회연대, 엠네스티 한국지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노조이주지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총 26개 민간단체)

* 고문

고은 시인, 유현석 변호사, 조준희 변호사, 홍성우 변호사

* 공동대표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용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자문위원회

김동한 교수, 김형태 변호사

<토론회 개요>

일시 : 2003년 5월 22일(목) 오후 3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사회 : 이호중 (한국의국어대학교 법대 교수)

- 발제 : 1. 보호감호제도의 실태와 그 대안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상임 활동가)
2. 사회보호법의 위헌성과 반인권성
박찬운 (변호사, 사회보호법폐지 공대위 집행위원장)
3. 외국의 보호감호제도
한영수 (경원대학교 법대 교수)

토론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김동한 (사회보호법폐지 공대위 자문위원, 법과 인권연구소 소장)
김해정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 발제자 및 토론자는 추후 개인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사회보호법과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현재 청송제2보호감호소에서는 실정법에 따라 피보호감호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처우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지”에 기획 연재된 사회보호법에 대한 내용과 일부 피보호감호자들이 각계단체에 사회보호법과 관련하여 진정, 탄원한 내용 중에서 일부 과장 및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 5. 16.

청송제2보호감호소 고충처리반 드림

TEL) 054-872-9511(구내번호 308)

FAX) 054-872-9704

1. 피보호감호자들의 작업에 대하여

가. 직업훈련 부분

현재 청송제2보호감호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과정은 자동차 정비, 보일러시공, 타일, 조적, 정보기기운용, 이용, 양복봉제, 올해 건축 도장과 미용을 신설하여 10개 공과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직업훈련의 종류가 지극히 낙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종 전부는 국가기술자격검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직종일뿐더러 일반사회에서도 선호도가 결코 낮지 않는 직종입니다. 일반 사회인들도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하였다 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자격 취득 후 취득한 분야에 대한 취업의 문제는 출소 후 국가기관뿐 아니라 본인의 일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더불어 사회인의 전과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취업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격증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 감호소에서의 위탁작업 부분

일부에서 국가가 피보호감호자들에게 작업을 강요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보호감호자들의 작업은 일반수형자의 강제노동과는 달리 사회보호법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 하에 실시하는 청원작업입니다.

다. 근로보상금 지급 부분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근로보상금의 경우, 피보호감호자근로보상금 지급규정(2002. 12. 3. 예규작업 제650호)에 의거하여 근로의 육고취, 작업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일반회계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은 7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989. 11. 10.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지급규정 제정 이후 6회에 걸쳐 개정하여 근로보상금을 인상하여 왔습니다. 현재의 근로보상금은 2003. 1. 1 일자로 전년대비 22% 인상하여 최저 7등급 1,400원에서 최고 1등급 5,80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바,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지와 근로정신함양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